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남윤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출문

국가보훈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7. 1.)한 「고용부담금 도입 등 의무고용제도 발전방안」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7
제3절 제도의 현황	20
제2장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기업간담회 결과 분석	31
제1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개요	33
제2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38
제3절 기업간담회 결과	53
제4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의 함의	56
제3장 합리적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61
제1절 취업지원실시기관 현황과 의무고용 실태	63
제2절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98
제4장 의무고용 실효성 제고 방안	117
제1절 인센티브 부여 방안	119
제2절 의무고용 강제 방안	132
제5장 정책함의 및 제언	139
참고문헌	145
부록	147
[부록1]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표	147
[부록2] 기업간담회 질문지	155
[부록3]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	159
[부록4]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161

[부록5] 중소중견대기업 비교(요약)	162
[부록6] 취업지원 실시기관 업종 분류	163

표 목차



〈표 1-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	13
〈표 1-2〉 보훈대상자별 취업지원 대상	21
〈표 1-3〉 채용시험 가점 대상 및 기준	22
〈표 1-4〉 취업지원 실시기관	23
〈표 1-5〉 보훈대상자별 취업지원 대상	24
〈표 1-6〉 제조업체 업종별 고용률 현황	25
〈표 1-7〉 비제조업체 업종별 고용률 현황	26
〈표 2-1〉 조사 설계 개요	34
〈표 2-2〉 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응답자 일반사항 (N=3,200)	37
〈표 2-3〉 경제활동 상태별 용어와 정의	39
〈표 2-4〉 고용지표와 산출식	39
〈표 2-5〉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지표	42
〈표 2-6〉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보조지표	44
〈표 2-7〉 취업지원대상자의 성별 선호하는 사업체	46
〈표 2-8〉 취업지원대상자의 연령별 선호하는 사업체	47
〈표 2-9〉 취업지원대상자의 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사업체	47
〈표 2-10〉 취업지원대상자의 성별 선호하는 연봉	49
〈표 2-11〉 취업지원대상자의 연령별 선호하는 연봉	50
〈표 2-12〉 취업지원대상자의 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연봉	50
〈표 2-13〉 취업지원대상자의 성별 선호하는 근무형태	51
〈표 2-14〉 취업지원대상자의 연령별 선호하는 근무형태	52
〈표 2-15〉 취업지원대상자의 교육수준별 선호하는 근무형태	52
〈표 2-16〉 FGI 대상 기업체 의무고용비율 관련 정보	53
〈표 2-17〉 법정 취업지원 실시기관	54
〈표 2-18〉 취업지원 수요량과 일자리 공급량 비교	58
〈표 3-1〉 취업지원실시기관 유형별 현황	63
〈표 3-2〉 취업지원 실시기관 의무고용비율별, 유형별 현황	65
〈표 3-3〉 제조업-비제조업 별 사업장 규모별 분포	67
〈표 3-4〉 기관 유형별 제조업-비제조업 별 사업장 규모별 분포	68
〈표 3-5〉 취업지원 실시기관 유형별 평균 종사자 수	69
〈표 3-6〉 취업지원실시기관 유형별 평균 종사자 수	70

〈표 3-7〉 의무고용비율별 취업인원 여부별 분포	71
〈표 3-8〉 의무고용비율별 취업인원이 있는 기관의 취업자 수 현황	72
〈표 3-9〉 의무고용비율 17%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73
〈표 3-10〉 의무고용비율 10%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74
〈표 3-11〉 의무고용비율 9%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74
〈표 3-12〉 의무고용비율 8%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75
〈표 3-13〉 의무고용비율 7%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76
〈표 3-14〉 의무고용비율 6%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76
〈표 3-15〉 의무고용비율 5%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77
〈표 3-16〉 의무고용비율 4%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78
〈표 3-17〉 의무고용비율 3%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79
〈표 3-18〉 취업지원 실시기관 업종 분류	80
〈표 3-20〉 의무고용비율 3% 기관의 업종별, 기업유형별 현황	83
〈표 3-21〉 의무고용비율 4% 기관의 업종별, 기업유형별 현황	84
〈표 3-22〉 의무고용비율 5% 기관의 업종별, 기업유형별 현황	85
〈표 3-23〉 의무고용비율 6% 기관의 업종별, 기업유형별 현황	86
〈표 3-24〉 의무고용비율 7% 기관의 업종별, 기업유형별 현황	86
〈표 3-25〉 의무고용비율 8% 기관의 업종별, 기업유형별 현황	87
〈표 3-26〉 기업규모별 취업지원 실시기관 분포	88
〈표 3-27〉 금융관련 5개 업종 취업실적 현황	90
〈표 3-28〉 기업규모별 취업지원 실시기관 평균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90
〈표 3-29〉 의무고용비율 3% 기관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91
〈표 3-30〉 의무고용비율 4% 기관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92
〈표 3-31〉 의무고용비율 5% 기관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93
〈표 3-32〉 의무고용비율 6% 기관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94
〈표 3-33〉 의무고용비율 7% 기관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94
〈표 3-34〉 의무고용비율 8% 기관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95
〈표 3-35〉 고용이행률과 관련 변수들 간 상관관계	96
〈표 3-36〉 취업자 수와 관련 변수들 간 상관관계	97
〈표 3-37〉 현행 업종분류와 중소기업 범위기준 업종분류 비교와 기업규모별 고용이행률	105
〈표 3-38〉 기업범위 기준: 평균 매출액과 주된 업종	110
〈표 3-39〉 5대, 7대 업종별 특성	111
〈표 3-40〉 기업규모별, 비제조업-제조업별 평균 고용이행률	112
〈표 3-41〉 44개 업종별 조정 의무고용비율 예시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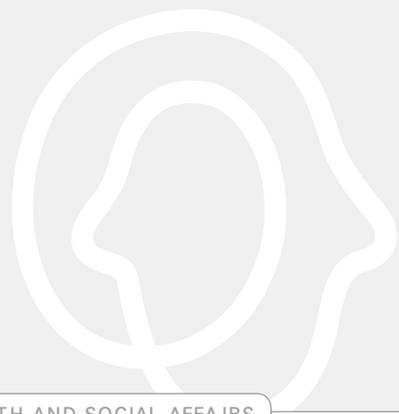
〈표 4-1〉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지원혜택	127
〈표 4-2〉 경영혁신중소기업(MAINBiz) 지원혜택	129
〈표 4-3〉 의무고용비율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 인식조사 결과	132
〈표 4-4〉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134
〈표 4-5〉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135
〈표 4-6〉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공표 현황	136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인원 추이	28
[그림 1-2] 공공기관 공기업체 특별채용 인원 추이	28
[그림 1-3] 일반기업체 특별채용 인원 추이	29
[그림 2-1]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지표	40
[그림 2-2]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보조지표	43
[그림 2-3] 취업지원대상자의 선호하는 사업체	45
[그림 2-4] 취업지원대상자의 선호하는 연봉	48
[그림 2-5] 취업지원대상자의 선호하는 근무형태	51
[그림 3-1] 사업체 및 제조업체 평균 종사자 수 변화	101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제도의 현황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 경제적·사회적 보상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어오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에서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제32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제33조의2), 보훈특별고용(제34조) 등의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1-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①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0.>
-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4. 1. 28.>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9. 15.>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특별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14 보훈 의무고용제도 발전방안

<p>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p>③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8. 3. 28.]</p> <p>제34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개정 2009. 2. 6., 2011. 9.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 삭제 <2011. 9. 15.>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6.></p> <p>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p>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p> <p>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p> <p>[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09. 2. 6.]</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92호, <https://www.law.go.kr> /[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2년 6월 10일 인출.

□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의무부와 대상(취업지원 실시기관), 의무고용비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간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과 같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의 변화, 그리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노동수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노정됨.

○ 취업 대기자의 높은 기대심리(눈높이)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경향으로 인해 보훈대상자를 직접 추천하는 보훈특별고용 취업은 지속적인 감

소 추세에 있음.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공자 본인으로부터 자녀 등 유가족 위주의 취업지원으로의 변화가 없지는 않았지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젊은 노동력 수요가 큰 미스매치 문제로 인해 의무고용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의무고용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그마저도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술한 것과 같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령화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젊은 노동수요로 인한 미스매치가 의무고용 이행률을 반등시키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구조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구조적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노동수요)의 총량과 취업지원 대상자(노동공급)의 총량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취업지원 대상자의 총규모, 즉 총노동공급량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총 수, 즉 총노동수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원천적으로 의무고용 이행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또 다른 구조적 측면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의 연령대와 기업의 수요 간의 미스매치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기대하거나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취업지원 대상자의 인적자본 특성의 미스매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적자본 특성이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역과 기관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제도적 측면에서는 의무고용 이행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음. 현재, 보훈특별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뿐

만 아니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고용 이행을 대체하려는 기업들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의무고용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고안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기관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또 한편으로 의무고용 이행률 제고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필요함.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17천여개 업체에서도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대상이 되는 전체 업체로 확장할 경우 업체의 전체적인 노동수요는 더 크게 부족해 질 것임.
- 따라서 취업지원 사업의 정책목표를 의무고용 이행률 제고에 둘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먼저, 의무고용률 이행이 저조한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보훈의무고용 대상자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같이 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의 규모와 같은 고용관련 지표를 생산하고, 취업지원 수요의 특성을 파악함.
- 이와 같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조정되지 않은 업종별 고용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의무고용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을 제고할 수 있는 강제방안과 유인방안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 보훈의무고용 대상자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15~64세) 1,352,778명
 - (표본) 목표 표본 국가보훈처 대상자(만 15~64세) 3,200명
 - (표본추출틀) 대상(본인, 배우자, 자녀), 자격(애국지사, 유족(전몰·순직, 4·19 사망자, 순직공무원), 전·공상군경(공상공무원 포함), 무공보국수훈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엽제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연령(15~34세, 35~54세, 55~64세)
 - (표본추출방법) 대상자별 비례할당
 - 대상별, 연령별, 대상자와의 관계별(본인, 배우자, 자녀) 층화
 - (주요 조사내용) 가구일반사항,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기타활동에 관한 사항, 가구경제상황 등
 - (조사방법) 1:1 전화면접 조사

□ 취업지원 대상자 경제활동 실태 분석 및 취업지원 실시기관 인식 분석

-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 등 고용관련 주요 지표 산출 및 취업지원 대상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일자리 수요 특성) 파악

- 취업지원 실시기관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현행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동시에 의무고용 이행률 제고를 위한 강제방안과 유인책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여 대안을 제시함.
- 현재 관리중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특성 분석 및 현행 의무고용률의 적정성 검토
 - 현재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17천여개소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종별 의무고용 이행률, 의무고용 취업자 수 등의 성과지표 검토
 - 이를 바탕으로 현행 업종별로 부과되어 있는 의무고용률의 적정성을 검토함.
- 합리적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는 업종을 오늘날 변화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설정함.
 -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97개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업종별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또는 단순화 하는 방안, 또는 새로운 기준(업종이 아닌 사업체 규모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 의무고용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방안과 유인방안 도출.
 - 고용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근거 마련.
 - 고용부담금의 의무고용 이행 강제 효과 검토.
 - 고용부담금 부과기초액 및 (필요시) 가산액 산정기준 마련.

2. 연구방법

-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등 유사 조사 사례 검토를 통한 조사표 설계.

- 조사표 설계는 연구진의 설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가보훈처 사업부서 검토 등을 통해 최종 확정.
- 모집단 정보 분석 및 예산을 고려하여 최적의 표본규모와 조사방법 검토 및 조사 실시.
 - 연구기간과 연구예산 제약 하에서 모집단 정보 분석을 통한 최적의 조사방법 제시(3,200명 대상 전화조사 실시).
-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분석
 - 현재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17천여개 기관의 업종별, 이행률별 의무고용 성과(이행률, 취업자 수)를 분석.
- 취업지원 실시기관 인사담당자 간담회
 - 주요 취업지원 실시기관 인사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기관의 인식, 고용이행과 곤란한 애로사항 청취, 적정한 이행률 제고 수단에 대한 모색.
- 문헌연구
 - 경제활동 실태조사,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한 유사사례 검토를 위한 문헌 고찰.
 - 현행 정책자료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업종별 특성 변화와 의무고용률 재설정을 위한 기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제3절 제도의 현황

1.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개요

□ 취업지원제도 법령 및 근거

○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기초하여 제공되고 있음.

-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국가법령센터).

• 동법의 제4장 28조에 따라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함

□ 취업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본인·배우자6급 이상 자녀), 보훈보상대상자(본인·배우자) 등 희생과 공훈 및 상이 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있음(〈표 1-2〉 참고).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중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등)의 자녀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표 1-2〉 보훈대상자별 취업지원 대상

구분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고엽제 휴유의증환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제대 군인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자녀	사망자 자녀	○	전몰·순직 군경자녀	×	×	사망·행불자 자녀	사망·행불자 자녀	×
	상이자 자녀	○	상이 6급 이상 자녀		장애 중증도 이상의 자녀	장애 11등급 이상의 자녀	상이 6급 이상의 자녀	×
손자녀	○	×	×	×	×	×	×	

자료: 국가보훈처 취업지원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https://job.mpva.go.kr/portal/popup200023.html>)

□ 취업지원제도의 세부 유형

○ (보훈특별고용) 법령이 정한 의무고용 비율에 따라 보훈관서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기업체가 고용하는 제도 유형을 의미함.

- 상시직원 20명 이상(제조업 200명 이상) 기업체에 업종별로 3~8% 고용 의무가 부여됨.
- 본인·배우자는 연령 제한이 없으나 자녀(1인)는 35세 이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시험 만점의 5%또는 10%의 가점을 부여하는 유형을 의미함.

- 국가유동자 등 본인은 10%, 그의 유족(배우자나 자녀)는 5%의 점수를 가산함(〈표 1-3〉 참고).
-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와 자녀는 10%의 점수를 가산함.
- 채용시험을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 전형마다 가점하되, 가점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표 1-3〉 채용시험 가점 대상 및 기준

대상 유형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국지사의 가족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 유공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본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등(지원대상자)의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대 중 1인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제대 중 1인
5.18 민주 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대 중 1인
특수임무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특수 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제대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장 공무원의 배우자

주: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함. 2012년 7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및 순직군경)의 본인이나 유족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국가보훈처 취업지원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https://job.mpva.go.kr/portal/popup200023.html>)

- (일반공무원 등 특별채용)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 등에서 채용직렬¹⁾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을 채용할 때, 보훈관서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하는 유형을 의미함.
 - 특별채용을 통해서서는 정원의 17% 이상에 대한 고용 의무를 부여함.

□ 취업지원 실시기관

-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크게 국가기관과 공사기업체와 사립학교로 고용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고용주체에 따라 규모별·업종별 취업지원 실시 내용을 달리함 (〈표 1-4〉 참고).
 - 국가기관·지자체·군부대·국공립학교 등은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7%를 특별채용할 고용의무를 가지며, 공사기업체는 종업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제조업체는 200명 이상) 정원의 3~8% 우선고용의 의무를 가짐.
 -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해당하는 공사기업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함.

〈표 1-4〉 취업지원 실시기관

구분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사기업체
대상기관	특별채용 정원 5명 이상	종업원 20명 이상(제조업은 200명 이상)
고용의무	정원의 17% 특별채용	정원의 3~8% 우선고용
5·18 민주 유공자	특별채용 가점부여	보훈특별고용 가점부여

자료: 국가보훈처 취업지원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https://job.mpva.go.kr/portal/popup200023.html>)

1) 방호, 간호조무, 운전, 위생, 조리, 우정 등의 직렬이 이에 해당함(국가보훈처 취업지원정보시스템, <https://job.mpva.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27>)

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현황

1. 취업지원 실시기관 고용현황

□ 전체 취업지원 실시기관 고용현황

○ 고용주체별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 및 공기업체가 일반 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편임(〈표 1-5〉 참고).

- 국가기관(지자체)는 63.2%, 공공기관·공기업체가 79.9%, 일반 기업체가 25.8%, 사립학교가 35.0%임(국가보훈처, 2022).

〈표 1-5〉 보훈대상자별 취업지원 대상

단위: 개, 명, %

구 분	합계	국가기관 (지자체)	기업체			사립 학교
			소계	공공기관 공기업체	일반 기업체	
기관업체 수	17,139	923	14,964	2,238	12,726	1,252
총 종업원 수	4,817,398	52,424	4,707,914	699,249	4,008,665	57,060
의무채용인원	217,977	8,448	204,320	42,250	162,070	5,209
취업인원	82,824	5,338	75,665	33,770	41,895	1821
의무고용률(%)	38.0	63.2	37.0	79.9	25.8	35.0

주: 2022년 9월 30일자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 제조업체 업종별 고용현황

○ 제조업 전체 1,850개 업체의 법정인원 56,900명 중 18,822명을 고용하고 있어 고용률은 약 33%임(〈표 1-6〉 참고).

- 담배 제조업이 77.4%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며, 기타 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음료 제조업이 113.4%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임.
- 담배 제조업 기업체가 민영화 전 정부기관 내지 공기업이었던 것의 영향을 받아 높은 의무고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1-6〉 제조업체 업종별 고용률 현황

단위: 개, 명, %

업종명	기업체 수	고용 비율	법정 인원	취업 인원	미취업 인원	고용률 (%)
음료 제조업	5	5	321	43	278	13.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6	6	1,847	279	1,568	15.1
식품 제조업	164	5	5,001	890	4,111	17.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0	3	352	107	245	30.4
가구 제조업	15	3	223	47	176	21.1
전기장비 제조업	76	6	2,363	490	1,873	20.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9	5	3,525	771	2,754	21.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9	7	1,098	313	785	28.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89	4	14,883	3,866	11,017	26.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1	3	104	28	76	26.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0	3	86	15	71	17.4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36	3	386	111	275	28.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3	3	675	153	522	22.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2	6	5,937	1,892	4,045	31.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	5	2,032	688	1,344	33.9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102	3	1,018	324	694	31.8
기타 제품 제조업	24	3	199	22	177	1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38	4	461	159	302	34.5
1차금속 제조업	94	6	3,850	1,617	2,233	4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1	4	8,536	4,301	4,235	50.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0	4	323	181	142	56.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4	4	2,270	1,537	733	67.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19	6	1,051	710	341	67.6
담배 제조업	3	7	359	278	81	77.4
계	1,850	-	56,900	18,822	38,078	33.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 비제조업체 업종별 고용현황

○ 비제조업 전체 13,114개 업체의 법정인원 147,420명 중 56,843명을 고용하고 있어 고용률은 약 38%임(〈표 1-7〉 참고).

- 광업지원서비스업이 130.3%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며, 가구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음식점 및 주점업이 6.4%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임.

〈표 1-7〉 비제조업체 업종별 고용률 현황

단위: 개, 명, %

업종명	기업체 수	고용 비율	고용률	업종명	기업체 수	고용 비율	고용률
가구내 고용활동	1	3	0.0	출판업	85	3	10.9
임업	6	3	66.7	소매업(자동차 제외)	402	4	23.3
농업	28	5	35.7	수상운송업	98	4	20.2
음식점 및 주점업	35	4	6.4	수도사업	4	8	99.7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광업	9	3	84.5	연구개발업	213	5	34.2
수리업	50	5	6.6	종합 건설업	656	5	26.1
전문직별 공사업	142	5	33.5	부동산업	131	5	65.5
사업지원 서비스업	351	3	11.3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98	4	27.5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167	4	30.2	손해 보험업	23	5	27.8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14	5	9.0	전문서비스업	156	3	32.9
어업	25	3	27.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69	7	40.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504	3	14.4	생명 보험업	24	5	28.6
임대업(부동산제외)	27	4	9.8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3	3	34.2
숙박업	279	4	14.4	항공운송업	29	5	40.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795	3	28.3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11	3	59.7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32	3	22.9	협회 및 단체	197	5	63.0
사회복지 서비스업	440	4	1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9	8	82.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92	5	50.9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8	3	48.1

업종명	기업체 수	고용 비율	고용률	업종명	기업체 수	고용 비율	고용률
비금속 광물광업 (연료용 제외)	21	4	20.0	금속광업	4	5	46.8
교육 서비스업	183	4	46.2	방송업	15	3	43.2
보건업	1,499	4	20.2	보험 및 연금업	28	7	102.6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24	5	33.4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 비스업	69	3	64.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195	3	35.7	통신업	58	5	51.8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031	4	19.3	금융업	1,518	7	7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0	3	23.9	도시철도 운송업	9	5	92.4
정보서비스업	47	4	19.5	철도운송업	7	5	99.6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행정	15	4	91.9	부동산관련서비스업	2	4	118.2
광업지원서비스업	2	3	130.3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 료재생업	4	4	40.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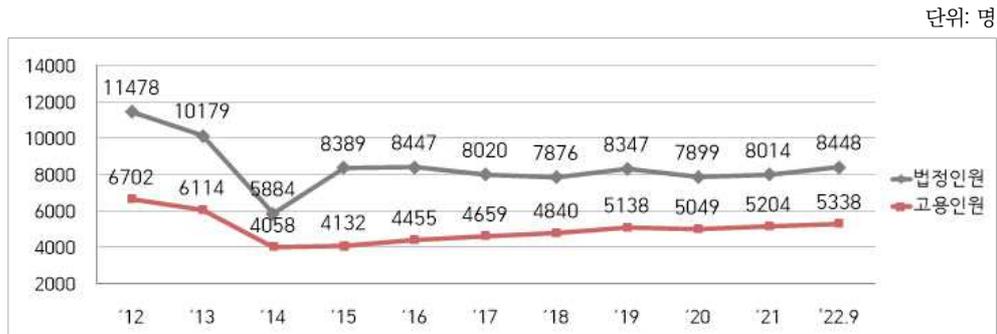
2. 취업지원 실시기관 고용 추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고용 추이

- 국가기관 등의 특별채용 법정인원은 15년에 대폭 증가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그림 1-1] 참고).
 - 14년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폐합되면서 법정인원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15년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²⁾ 일자리가 늘어난 데 영향을 받음 (국가보훈처, 2022).
- 국가기관 등의 특별채용 취업인원은 14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1-1] 참고).
 - 14년 4,058명에서 22년 9월 기준 5,330명으로 기(국가보훈처, 2022).

2) 15년 의무고용률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함(국가보훈처 내부자료, 2022)

[그림 1-1]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인원 추이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 공공기관 공기업체 고용 추이

○ 공기업체의 법정인원과 취업인원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음([그림 1-2] 참고).

- 법정인원 대비 취업인원인 고용률은 2012년 88%에서 2022년 80%로 감소함.

[그림 1-2] 공공기관 공기업체 특별채용 인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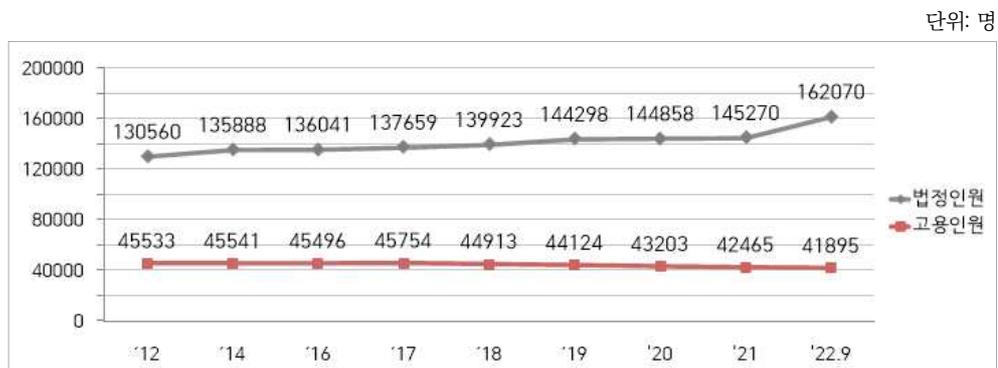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 일반기업체 고용 추이

○ 일반기업체의 법정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인원은 감소하고 있음([그림 1-3] 참고).

- 고용률은 2012년 34.8%에서 2022년 25.8%로 감소함.

[그림 1-3] 일반기업체 특별채용 인원 추이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제2장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기업간담회 결과 분석

제1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개요

제2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제3절 기업 간담회 결과

제4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의 함의

제 2 장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기업간담회 결과 분석

제1절 경제활동실태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조사 실시 배경 및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90년대 후반 이후 의무부과 대상 및 고용비용 미조정, 생애 첫 취업 연령대 대상자 감소, 민간기업 의무고용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국회 등의 제도 실효성 제기, 과도한 규제제기민원 해소를 위해 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근거한 의무고용 추가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 보훈특별고용제도 개편 필요.
 -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무를 부과 후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 방안 도입 검토.

□ 조사 설계

- 조사방법은 구조화 된 설문을 사용한 전화면접 조사(CATI: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 활용)로 진행.
- 조사내용은 응답자 일반사항(성/연령/교육수준/혼인상태 등) 8문항, 일에 관한 사항(근로시간/업무여부/일하지 않는 이유 등) 16문항, 구직에 관한 사항(구직여부/구직방법 등) 6문항, 기타 활용에 관한 사항(일을 원했는지 등) 6문항, 기타(가구경제상황 등) 8문항으로 구성함.
- 조사기간은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됨.

〈표 2-1〉 조사 설계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52,778만명 ○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조사방법	○ 1:1 전화면접 조사 (리스트를 통한 CATI시스템 활용)
표본추출 방법	○ 대상자별 비례할당(리스트조사 - 5배수 이상 제공) - 대상별, 연령별, 대상자와의 관계별 층화 ○ 목표 표본: 3,200명
조사내용	○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 ○ 일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업무/직장여부, 일하는/하지 않는 이유, 근로시간 등 - 직업,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고용계약 기간, 월평균 임금 등 ○ 구직에 관한 사항: 지난 4주 내 구직 여부, 구직 방법, 구직 경로 등 ○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일을 원했는지, 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 등 ○ 기타: 가구경제상황 등
조사기간	2022년 8월 23일 ~ 9월 5일

자료: 저자 작성

2. 표본 추출

□ 표본추출 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15~64세) 135만 2천 7백 7십 8명의 전국 17개 시도 거주자임.
 - 표본추출방법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수권자 명부 기준 36만 1천 4백 3십명 중에서 대상별, 연령별, 관계별 층화 표집을 통한 제공근 비례할당 방법을 사용하여 총 3,200명을 표본으로 함
 - 제공근 비례할당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분석대상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임
 - 각 대상자별 모집단 규모의 차이가 많아 단순 비례할당으로 진행할 경우, 특정 연령대(15~35세 연령층)은 모집단 대비 표본의 비율이 매우 작아 분석 시 신뢰성이 낮아지며 모집단의 분석 대상별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 3,200명을 조사 진행하였으며 조사 완료 후 분석과정에서 모집단의 비율(대상별, 자격별, 연령별)에 맞게 가중치를 적용함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1.73%임

3. 조사표 설계

-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목적은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잠재취업가능자 비율, 잠재구직자 비율 등 주요 고용지표 생성임([부록 1 참조]).
 - 대상별·자격별·연령별 주요 고용 지표를 산출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설계하였음.
- A. 가구 일반 사항
 - 응답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측정하는 분야로 가구주 여부(가구주/가구원), 성별, 교육수준(과정, 상태)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함.
- B. 일에 관한 사항
 - 응답자의 고용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측정하는 분야로 자신의 수입이 있는 일,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복수직업 여부, 실제취업시간, 추가 취업 또는 전직 희망 여부 및 가능성, 취업기간, 직업, 종사상 지위, 고용계약기간, 월평균임금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함.
- C. 구직에 관한 사항
 - 응답자 중 실업자 및 잠재취업가능자의 구직에 관한 사항을 측정하는 분야로 구직활동 여부, 취업가능성, 구직방법, 구직경로, 구직기간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함.
- D. 기타활동에 관한 사항
 - 응답자 중 잠재구직자,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기타활동에 관한 사항을 측정하는 분야로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 비구직이유, 구직경험 여부, 최근 구직 시기, 기타 주된 활동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함.

□ E. 가구소득

- 응답자의 최근 3개월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함.

□ F. 보훈가족취업지원 정책 및 서비스

- 응답자들이 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야로 희망 산업(업종), 희망 직업(업무), 선호하는 직장의 종류(규모), 희망연봉, 근무형태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함.

4. 응답자 일반사항

□ 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응답자 일반사항

- 전체 응답자의 75.5%가 남성, 24.5%가 여성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56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전체 응답자 중 62.2%).
 -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46~55세 19.9%, 36~45세 14.4% 순이며 15~35세가 3.7%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응답자 중 전상공상군경이 51.5%로 구분된 취업지원대상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51.5% 중 31.7%는 전상공상군경의 자녀, 19.4%는 전상공상군경 본인안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취업지원대상은 고엽제의증 18.9%(본인 및 배우자 10.1%, 자녀 8.8%), 무공보국수훈 10.4%(본인)순임.
-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대학교(4년제 이상) 33.4%, 고등학교 28.6%, 대학교(4년제 미만) 14.5% 순으로 나타났다³⁾.
-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28.8%).

3) 교육수준은 해당 항목의 재학, 휴학 및 졸업의 상태를 반영하였다.

〈표 2-2〉 보호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응답자 일반사항 (N=3,200)

단위: %, (명)

구분		비율	
〈전 체〉		100.0 (3,200)	
성별	남성	75.5	
	여성	24.5	
연령대	15~35세	3.7	
	36~45세	14.2	
	46~55세	19.9	
	56세 이상	62.2	
취업지원대상 (보호대상자 분류 및 세부관계별)	독립유공자	〈전 체〉	3.6
		자녀	3.6
	전물순직군경	〈전 체〉	8.2
		본인(배우자)	1.2
		자녀	7.0
	전상공상군경	〈전 체〉	51.1
		본인(배우자)	19.4
		자녀	31.7
	무공보국수훈	〈전 체〉	10.4
		본인(배우자)	10.4
	제대군인	〈전 체〉	7.2
		본인(배우자)	7.2
	고엽제의증	〈전 체〉	18.9
		본인(배우자)	10.1
		자녀	8.8
	보호보상대상	〈전 체〉	0.6
본인(배우자)		0.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1	
	중학교	5.0	
	고등학교	28.6	
	대학교(4년제 미만)	14.5	
	대학교(4년제 이상)	33.4	
	대학원 이상	12.0	
	(무응답)	1.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8	
	200 ~ 300만원 미만	19.5	
	300 ~ 400만원 미만	14.7	
	400 ~ 500만원 미만	11.7	
	500 ~ 600만원 미만	8.3	
	600만원 이상	17.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제2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1.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이 장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과 같은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추가 취업지원 대상자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제활동 실태 파악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규모를 예측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여기서는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지표 외에 고용보조지표로 활용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와 같은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등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잠재적 추가 취업지원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 아래는 이 장에서 활용하는 지표에 사용하는 용어를 간략하게 정의한 내용이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따름(통계청, 2022, pp. 8~9)

〈표 2-3〉 경제활동 상태별 용어와 정의

용어	정의
취업자	- 한주간 수입 목적의 일을 한 시간 이상 한 자 - 무급가족종사자(수입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자) - 일시휴직자
실업자	- 지난 한 주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했으며,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이 바로 가능한 자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 64세 이하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 64세 이하 인구 중 취업 및 실업 상태도 아닌 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고, 추가취업을 희망하며 취업이 가능한자
잠재취업가능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했으나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잠재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하지 않았지만, 취업희망하고 취업 가능한자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
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

자료: 통계청(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정보보고서, pp. 8~9

- 아래 표는 이 장에서 활용하는 고용지표와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임. 지표 산출 방식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따름(통계청, 2022,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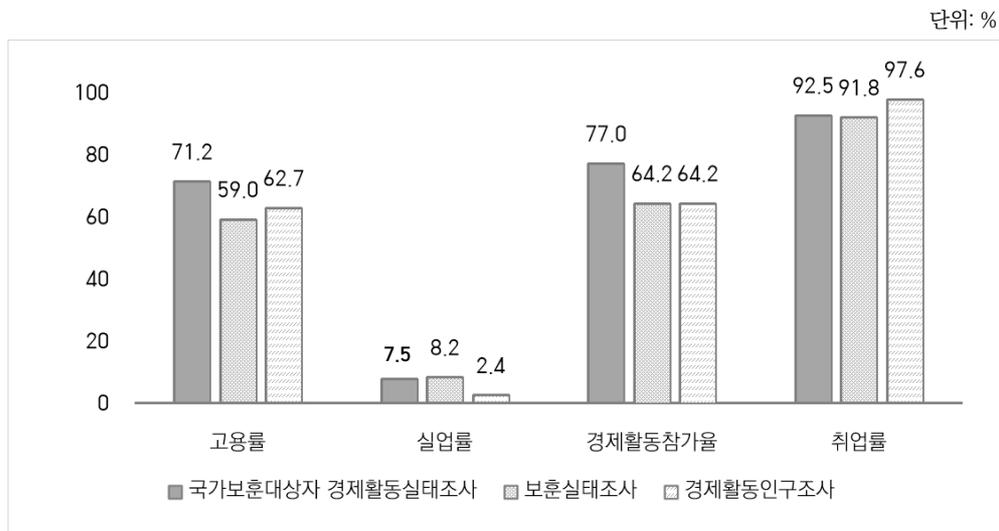
〈표 2-4〉 고용지표와 산출식

지표	산출식
고용률	$(\text{취업자 수} \div \text{15세~64세이하 대상자 수}) \times 100$
실업률	$(\text{실업자 수} \div \text{경제활동인구 수}) \times 100$
경제활동참가율	$(\text{경제활동인구 수} \div \text{15세이상~64세이하 대상자 수}) \times 100$
취업률	$(\text{취업자 수} \div \text{경제활동인구 수}) \times 100$
고용보조지표1	$(\text{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 + \text{실업자 수}) \div \text{경제활동인구 수} \times 100$
고용보조지표2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div \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고용보조지표3	$(\text{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 + \text{실업자 수}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div \text{확장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자료: 통계청(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정보보고서, p.9

- 보훈대상자의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은 세 가지 데이터로 분석하여 [그림 2-1]과 <표 2-5>에 제시했음
- 첫 번째 데이터는 이 연구를 위해 조사한 2022년 9월에 조사한 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이며, 나머지는 2021년 9월에 조사한 보훈실태조사와 통계청의 2022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임
- 통계청은 경제활동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매달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보훈대상 취업지원대상자의 고용상태 등을 비교할 수 있음
- 보훈실태조사는 보훈대상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가구 및 생활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이 연구를 위해 수집한 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의 대표성을 비교할 수 있음.

[그림 2-1]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지표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2) 국가보훈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3) 통계청(2022). 2022년 9월 고용동향.

-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⁴⁾와 보훈실태조사에서 집계된 고용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약 63%이며, 국가보훈대상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률은 71%로서 전체 인구보다 약 9%p 높고 보훈실태조사 보다 12%p 높음
 -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취업자 수는 963천 명으로 추정됨
-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업률은 전체 인구 실업률에 비해 약 세 배 정도 높으나, 보훈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임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2.4%이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업률은 7.5%로 높게 나타남. 이는 보훈실태조사의 8.2%와 유사한 수준임
 -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실업자 수는 약 78,097명으로 추정됨
- 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훈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높음. 다른 두 조사는 유사한 비율을 보임
 - 우리나라 전체 인구나 보훈실태조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인 반면,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는 77%로서 다른 두 조사결과에 비해 약 13%p 높게 나타남
 -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경제활동인구 수는 약 1백만 명 정도로 추정됨
- 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의 모집단은 학생이나 군인에 해당하는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작고, 대상자 중 배우자의 비중이 매우 작아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고용률도 전체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

4) 이 보고서에서 기술하는 국가보훈대상 취업지원대상자의 연령구간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연령구간은 동일하게 15세 이상에서 64세 이하 구간을 의미하며 이후 기술하는 전체 인구나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모두 위 연령대의 대상자를 의미함.

측할 수 있음.

- 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의 취업률이 전체 인구의 취업률보다 낮지만 (-5.0%p) 전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후자보다 높아(+12.8%p), 고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음.

〈표 2-5〉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지표

단위: %, 명

구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보훈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	(71.2)	(59.0)	62.7
실업률	(7.5)	(8.2)	2.4(2.8)*
경제활동참가율	(77.0)	(64.2)	64.2
취업률	(92.5)	(91.8)	97.6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963,200	364,882
	실업자 수	78,097	32,733
	계	1,041,297	397,615
15세~64세 인구수	1,352,778	618,958	45,284,000

주 1)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대상자 사례 수 추계는 분석 대상자에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했음.

2) *()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계절조정 실업률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2) 국가보훈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3) 통계청(2022), 2022년 9월 고용동향.

2. 고용보조지표

□ 고용보조지표는 1) 경제활동인구 중 시간 관련하여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2) 비경제활동인구이지만 잠재적으로 취업 가능한 자, 3) 잠재적 구직자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지표로서, 보훈대상자 중 추가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해석 가능함

- 고용보조지표1은 실업자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를 고려하여 산출한 것임.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는 짧은 시간 동안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경기변동으로 인해 고용불안정 상태로 변화하는 등의 이유로 부분실업자로 볼 수 있음

- 고용보조지표2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취업가능자나 잠재구직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지표임. 경기변동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일부는 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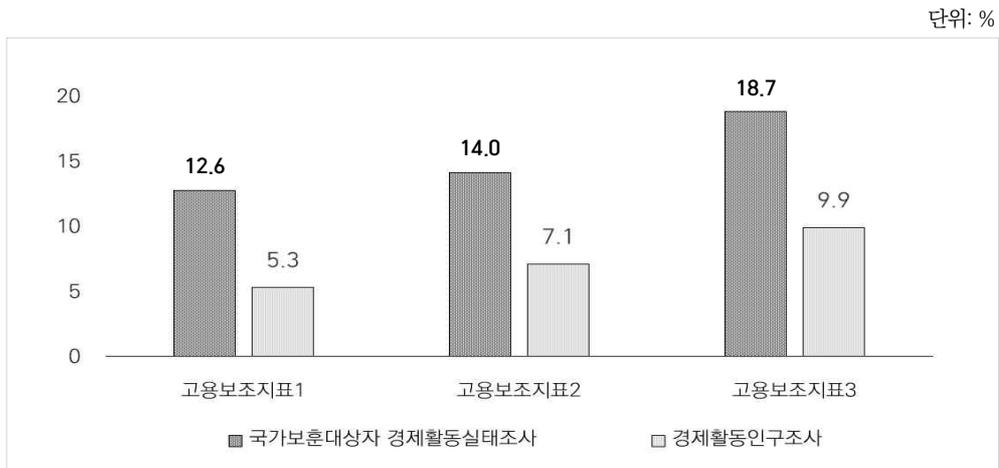
자로 변동되지만, 일부는 확장된 실업의 상태인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로 변화함. 이러한 상태까지 포괄하여 산출하는 실업률로 볼 수 있음

- 고용보조지표3은 실업자와 부분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모두 고려한 실업의 개념까지 포괄하여 산출한 지표로서, 취업지원대상 인구의 최대 인원을 고려한 지표로 볼 수 있음

□ 보훈대상 경제활동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한 고용보조지표1에서 고용보조지표 3까지의 결과는 <표 2-6> [그림 2-2]에 제시함

- 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고용보조지표1-3까지 모두 두 배에 가깝게 높게 나타남. 앞서 기술한 실업률과 유사한 결과임
- 고용보조지표1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는 12.6%이지만 전체 인구 대상은 5.3%임. 고용보조지표2의 경우 전자는 14.0%인 반면, 후자는 7.1%, 고용보조지표3은 각각 18.7%와 9.9%로 나타남

[그림 2-2]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보조지표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22), 2022년 9월 고용동향

□ 고용보조지표1에서 고용보조지표 3까지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

한 대상자는 최대 약 20만 8천 명으로 추정됨

- 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만 고려하면 약 13만 명 정도로 예상되며,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만을 고려한다면 약 16만 명 정도가 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추정됨

〈표 2-6〉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보조지표

단위: %, 명

구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a)	52,570	834,000
잠재경제활동인구수	잠재취업가능자수	73,000
	잠재구직자수	1,404,000
	계(t)	1,476,000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T)	1,119,506	30,569,000
실업자+a	130,667	1,538,000
고용보조지표1	(12.6)	(5.3)
실업자+t	156,306	2,180,000
고용보조지표2	(14.0)	(7.1)
실업자+a+t	208,876	3,014,000
고용보조지표3	(18.7)	(9.9)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22), 2022년 9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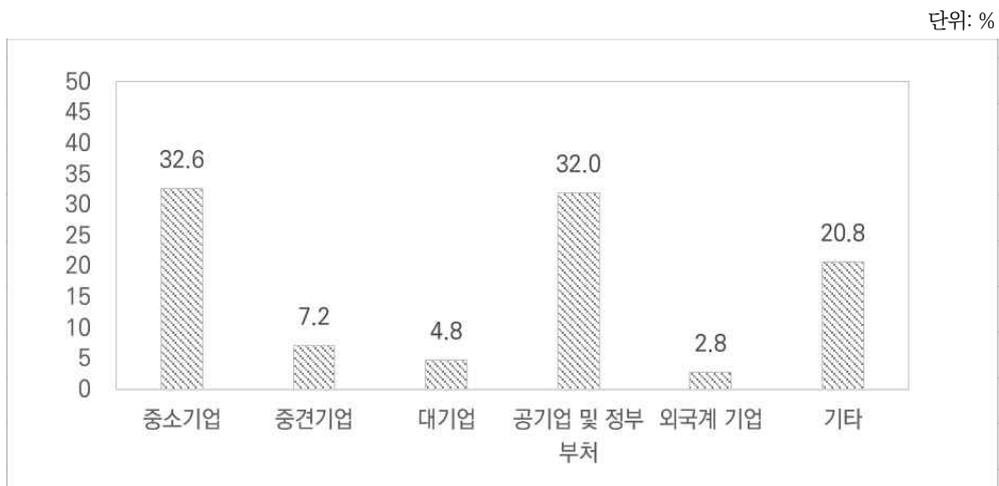
주: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실태조사 대상자 사례 수 추계는 분석 대상자에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했음.
보훈실태조사는 고용보조지표와 관련한 문항을 조사하고 있지 않아 이 표에서는 관련 지표를 제시하지 못함.

3. 취업지원 수요 분석

가. 선호하는 사업체

- 취업지원대상자가 선호하는 사업체는 중소기업과 공기업/정부부처가 각각 32%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나타남
- 공기업/정부부처에 대한 선호가 큰 것은 직업안정성이 높은데다, 실제 이들 사업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이행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짐작됨
- 민간기업 중에서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민간 부문에서는 공공부문과 달리 의무고용 이행에 따른 취업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짐작됨. 결국 주로 자력으로 취업을 해야하는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짐작할 수 있음
 - <표 2-2>에서 보듯이 응답자 중 46세 이상의 중고령층이 약 82%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할 수 있음

[그림 2-3] 취업지원대상자의 선호하는 사업체



주: 취업지원대상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수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사업체의 경우, 남성은 중소기업, 공기업/정부부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꼽았음. 여성도 유사한 양상을 보임. 다만 여성의 경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선호가 1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7〉 취업지원대상자의 성별 선호하는 사업체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중소기업	30.9	36.5
중견기업	5.5	11.0
대기업	4.3	5.8
공기업 및 정부부처	31.2	33.8
외국계 기업	3.9	12.8
기타	24.2	0.0
합계	100.0	100.0

주: 취업지원대상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χ^2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 선호하는 사업체의 경우 연령별로 차이를 보임

- 15-35세는 공기업/정부부처, 중견기업 순으로 선호를 보임. 이는 청년층의 직장안정성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36-45세는 공기업/정부부처가 47.7%로 높은 비율을 보임
- 46-55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으며, 공기업/정부부처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56세 이상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이들은 이미 퇴직한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새로 이직할 직장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을 수 있으며, 또한 주로 공채로 채용하는 대기업과 같은 기업에는 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표 2-8〉 취업지원대상자의 연령별 선호하는 사업체

단위: %

구분	15-35세	36-45세	46-55세	56세
중소기업	9.3	12.9	37.6	34.4
중견기업	22.8	24.9	1.4	6.0
대기업	4.8	0.2	8.4	4.5
공기업 및 정부부처	25.9	47.7	26.8	31.8
외국계 기업	0.0	0.6	1.8	3.2
기타	37.3	13.6	24.0	2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취업지원대상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χ^2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 교육수준별로 선호하는 사업체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공기업/정부부처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고졸이하의 경우 중소기업을 가장 선호하지만, 2년제,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공기업/정부부처를 가장 선호함. 대학원 이상의 경우 중소기업과 공기업/정부부처를 유사한 비율로 선호함

〈표 2-9〉 취업지원대상자의 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사업체

단위: %

구분	고졸이하	2년제 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 이상
중소기업	31.0	35.3	34.9	28.2
중견기업	9.4	3.1	8.3	3.4
대기업	3.8	5.0	6.3	0.1
공기업 및 정부부처	25.3	44.1	35.3	27.2
외국계 기업	5.1	0.3	0.7	3.7
기타	25.3	12.3	14.6	37.4
합계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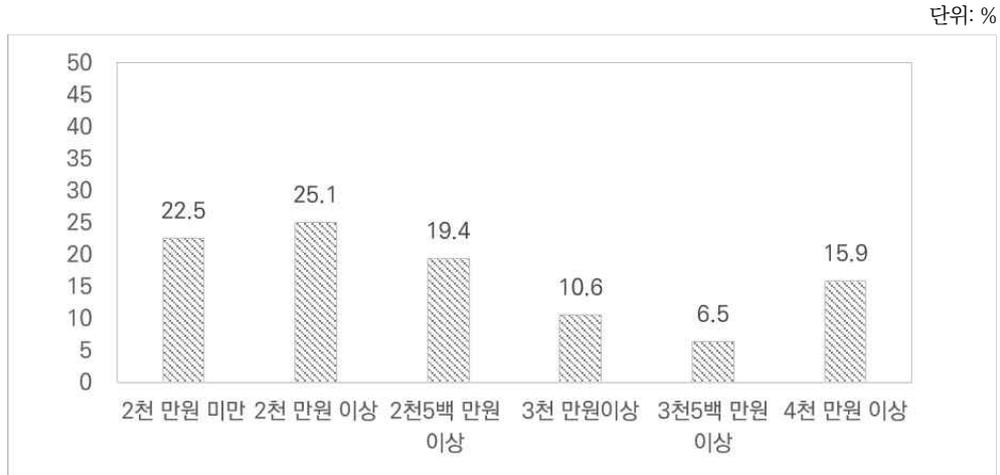
주: 취업지원대상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χ^2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나. 희망 연봉

○ 취업대상자가 희망하는 연봉은 2,000-2,500만원이 2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천만원 미만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그림 2-4] 취업지원대상자의 선호하는 연봉



주: 취업지원대상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수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연봉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선호하는 연봉수준이 높게 나타남. 4천만원 이상의 경우 남성은 18%인 반면 여성은 11%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2천만원 미만의 경우 남성은 18%가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34%가 선호함

〈표 2-10〉 취업지원대상자의 성별 선호하는 연봉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2천미만	17.5	34.2
2천이상	26.4	21.8
2천5백이상	18.3	22.1
3천이상	11.9	7.6
3천5백이상	7.7	3.6
4천이상	18.2	10.8
합계	100.0	100.0

주: 취업지원대상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χ^2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 연령별로 선호하는 연봉에서 차이를 보임.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선호하는 연봉수준이 낮아짐

- 15-35세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이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다음으로 높은 2,500-3,000만원이 높게 나타남
- 36-45세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29%에 그침. 다음으로는 2,500-3,000만원이 20%정도 차지함
- 46-55세의 경우 2,500-3,000만원이 24%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다음으로는 3,000-3,500만원이 높은 비율을 나타냄
- 56세 이상의 경우 2,000-2,500만원이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2천만원 미만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2-11〉 취업지원대상자의 연령별 선호하는 연봉

단위: %

구분	15-35세	36-45세	46-55세	56세
2천미만	12.1	13.2	15.7	25.0
2천이상	0.8	16.4	9.0	29.8
2천5백이상	27.3	19.7	24.0	18.2
3천이상	9.8	4.6	23.1	8.9
3천5백이상	8.4	17.5	5.9	5.5
4천이상	41.6	28.6	22.3	12.6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취업지원대상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χ^2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 교육수준별로 선호하는 연봉에 차이가 있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선호하는 연봉도 높게 나타남

○ 고졸이하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이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반면에 대학원 이상은 4천만원 이상이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 2-12〉 취업지원대상자의 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연봉

단위: %

구분	고졸이하	2년제 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 이상
2천미만	35.7	23.2	7.0	14.1
2천이상	23.1	26.3	31.7	16.8
2천5백이상	18.5	24.7	19.1	14.4
3천이상	7.9	12.0	10.6	15.4
3천5백이상	4.7	6.3	7.7	10.9
4천이상	10.2	7.5	24.0	28.5
합계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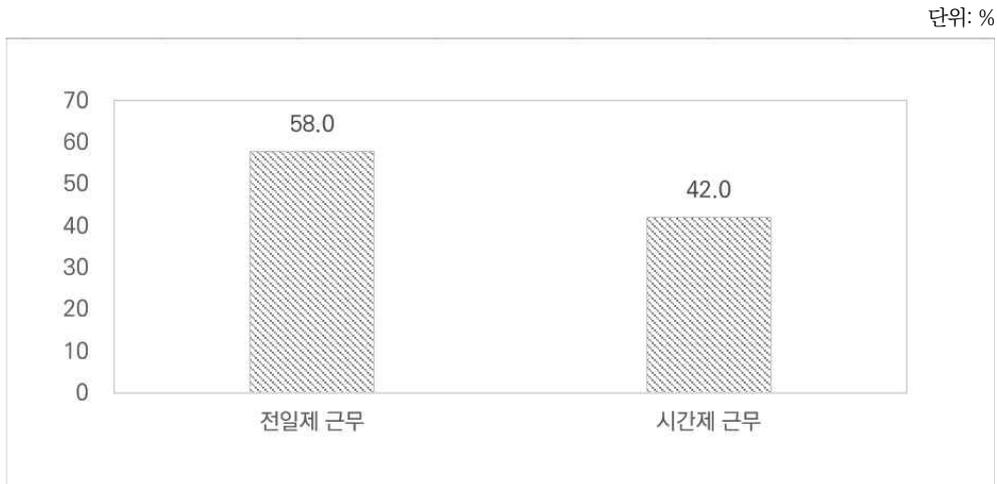
주: 취업지원대상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χ^2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다. 선호하는 근무형태

□ 선호하는 근무형태의 경우, 약 6:4의 비율로 시간제에 비해 전일제를 선호함.

[그림 2-5] 취업지원대상자의 선호하는 근무형태



주: 취업지원대상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수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근무형태에 차이를 보임. 남성의 68%가 전일제 근무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66%가 시간제 근무를 선호함. 여성들은 가족돌봄을 위해 시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짐

(표 2-13) 취업지원대상자의 성별 선호하는 근무형태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전일제 근무	68.2	34.1
시간제 근무	31.8	65.9
합계	100.0	100.0

주: 취업지원대상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χ^2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근무형태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전일제를 선호하는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제 근무를 선호함.
- 특히 46세 이상의 경우 전일제 근무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점과 자녀양육과 가사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임.

〈표 2-14〉 취업지원대상자의 연령별 선호하는 근무형태

단위: %

구분	15-35세	36-45세	46-55세	56세
전일제 근무	75.9	80.4	51.8	56.3
시간제 근무	24.1	19.6	48.3	43.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취업지원대상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χ^2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 교육수준별로 선호하는 근무형태의 경우, 2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일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남. 대학원 이상의 경우에는 고졸이하에 비해 전일제 선호가 낮은 특성을 보임

〈표 2-15〉 취업지원대상자의 교육수준별 선호하는 근무형태

단위: %

구분	고졸이하	2년제 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 이상
전일제 근무	54.8	66.9	58.2	51.8
시간제 근무	45.2	33.1	41.8	48.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취업지원대상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χ^2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제3절 기업간담회 결과

□ 인터뷰 개요

- 일시: 11월 11일(금) 기업 당 30분씩
- 대상: 공공기관, 종업원 20명 이상 공사기업체, 200인 이상 제조업체의 인사 담당자
- 최대한 의무고용비율이 미달인 기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음.

〈표 2-16〉 FGI 대상 기업체 의무고용비율 관련 정보

단위: 명, %

구분	A사	B사	C사	D사
총직원수	709	166	756	2,733
의무고용비율 (%)	4	5	8	4
본.지사	지사	본사	본사	본사
제조업구분	비제조업	비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
기관구분	일반기업체	일반기업체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법정인원	28	8	60	109
법정취업인원	21	5	59	39
사무직	16	5	59	27
기술직	4	0	0	9
생산직	1	0	0	1
영업직	0	0	0	2
미취업	7	3	1	70
법정취업률(%)	75	63	98	36
취업관리청	서울지방 보훈청	서울지방 보훈청	서울지방 보훈청	서울지방 보훈청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 법정 의무고용비율은 대상기관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이 다름(〈표 2-17〉 참조).

- FGI 대상 기업은 모두 공사기업체로 의무고용비율은 4~8%를 적용받고 있음

〈표 2-17〉 법정 취업지원 실시기관

구분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사기업체
대상기관	특별채용 정원 5명 이상	종업원 20명 이상(제조업은 200명 이상)
고용의무	정원의 17% 특별채용	정원의 3~8% 우선고용
5·18 민주 유공자	특별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부여	가점부여

자료: 국가보훈처 취업지원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https://job.mpva.go.kr/portal/popup200023.html>)

- 질문은 개방형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배포했으며 현장에서 30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질문의 내용은 1) 취업지원대상기관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현황 2) 취업지원대상자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3)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질문지는 부록에 제시했음
-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제시했음. 1) 취업지원대상기관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현황 2) 취업지원대상자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3)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1. 취업지원대상기관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현황

-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채용 원칙임
 - 채용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함. 채용하면 쉽게 해고할 수 없기 때문임. 기업은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우선적임.
-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비율이 설정된 점은 기업에 지속적으로 부담감으로 작용함.
 - 특별고용명령을 통해 추천명단이 제공된 경우 기업은 부적합한 지원자라도 선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
 - 의무고용비율 충족을 위해 채용부서 임직원에게 보훈대상자를 채용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음. 과태료를 지불하더라도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보훈대상자 채용의 경우 가점방식과 특별고용방식을 병행하거나, 가점방식을 위주로 채용을 진행함
 - 특별고용방식의 경우 추천인원 중에서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음
 - 반면에 가점방식의 경우 일반지원자와의 경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직무능력 등에서 일반지원자가 차이가 거의 없음. 그 이유로 가점방식을 선호함

2. 취업지원대상자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 보훈대상지원자의 인력풀이 적은 것이 문제임. 일반 공고의 경우 지원자 중에서 보훈대상자 비율이 의무고용비율에 비해 매우 적은 현상이 발생함(예: 5,000명 지원자 중 10명 미만)
 - 기업의 규모(소규모), 업종의 특성(예: 금융, 보험) 등으로 보훈대상자 중에서 적합한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보훈특별고용의 경우 지원자 중에서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보훈특별채용 공고를 내어도 적합한 지원자가 적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도 함
 - 높은 경쟁률로 인해 여러 단계의 전형을 거치게 되면 최종 선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가점채용의 경우 일련의 전형단계에서 가점을 받아도 서류전형 합격 이후 필기, 면접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임
- 채용방식이 정기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변경되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 특별채용 등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이 될 수 있음
 - 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지원할 시간적 여유가 적어짐. 또한 부

서별 수요가 발생하여 수시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고를 내어도 해당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가 적을 수 있음

□ 의무고용비율 충족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계약직 근무의 경우 계약 종료 또는 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측면이 있음. 해당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기가 쉽지 않음

□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의 경우, 고연봉을 지급하는 대기업의 경우 큰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4절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의 함의

1.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의 함의

□ 취업 수요와 공급 비교

○ 실태조사 결과 실업자(지난 4주간 구직활동 & 취업가능) 약 8만명(약 78,097명), 잠재취업가능자(비경활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 but 취업불가능) 약 1만명(약 9,937명), 잠재구직자(비경활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 하지 않음 but 취업희망 & 취업가능) 약 7만명(68,272명)

○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취업지원 수요 규모와 현 의무고용제도 법정인원, 취업인원 비교. 수요측을 실업자로만 볼 경우와 잠재구직·취업자까지 포함할 경우로 구분해서 비교

- 취업지원 수요의 최소치는 실업자 기준으로 78,097명, 최대치는 잠재구직·취업가능자까지 포함한 156,306명임. 한편, 일자리 공급량은 법정 의무고용 인원에서 취업자 수를 제외한 135,153명임.

- 실업자를 기준으로 취업지원 수요량을 잡을 때 약 57천명의 초과공급(약 57천 개의 일자리가 남아있다는 의미) 발생, 잠재구직·취업자까지 포함해서 공급량을 잡을 때는 약 21천명의 초과수요(약 21천개의 일자리가 부족

하다는 의미) 발생

- 즉, 취업지원의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 초과공급과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통상의 일자리 정책이 적극적 구직 활동과 취업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업자를 기준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최근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시장의 경직 상황에 대비하여 취업지원 수요량을 실제 측정된 것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는 있음.
 - 잠재구직자와 잠재취업자의 경우 당장의 구직알선과 같은 고용서비스와 더불어 취업역량을 제고해서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함. 즉, 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직역량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전술한 것과 같이 실업자를 기준으로 취업지원 수요량을 측정했을 때 약 57천명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지만 이것은 기업의 실질적인 노동수요(필요 일자리 공급량)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법정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업의 실질적인 노동수요와 법정 인원으로 측정된 노동수요 간의 괴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전제로 의무고용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한가지 직시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이 집계된 노동수요(일자리 공급량)는 현재 국가보훈처에의 행정력이 미치는 기관에 한정된 것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사자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업체(또는 기관)을 포괄할 경우 일자리가 부족한 초과수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임. 즉,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업을 알선할 필요가 있음.

〈표 2-18〉 취업지원 수요량과 일자리 공급량 비교

단위: 명

취업지원 수요(실태조사)		일자리 공급(행정자료)	
구분	인원	구분	인원
실업자(A)	78,097	의무채용 인원(D)	217,977
추가(B)	78,209	취업자(E)	82,824
잠재취업가능자	9,937		
잠재구직자	69,272		
총계(C=A+B)	156,306	미충족 인원(F=D-E)	135,153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2)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2. 취업지원 실시기관 인사담당자 간담회 결과의 함의

□ 의무고용비율의 현실화가 필요함

- 대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에 맞는 인원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예를 들어 3만명 직원을 가진 한 기업의 경우 4% 의무고용비율이 적용될 경우 1,200명에 해당함. 좀 더 현실적인 의무고용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업종, 규모, 이익률 등 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고용비율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규모, 금융업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훈대상자 중에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움

□ 전체 구직자 중에서 보훈대상자 비율에 관한 정보 확보가 필요함. 취업의사가 있는 보훈대상자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의무고용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과 지원자를 연계하여 해당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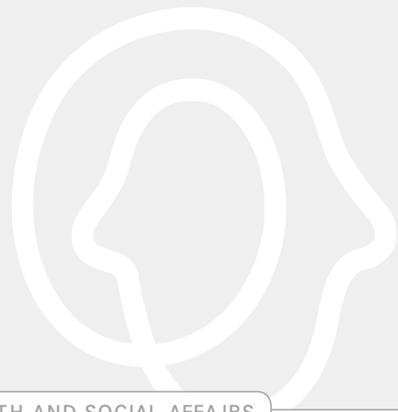
- 제조업(예: 반도체 기업)의 경우 특정 기술 연수과정을 개설, 연수성적 평가를 통해 채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인사담당자가 전체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함
 - 보훈특별고용제도에서 기업에 추천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풀이 협소하여 추천된 대상자 중에서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기업이 지원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쌍방향 취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추천 인력 풀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상반된 의견이 존재함
 -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됨. 따라서 의무고용을 대신하여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 징수된 이행강제금을 취업지원 대상자의 인적자본 향상에 사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훈 고용시장의 수요-공급의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반면에 의무고용 부담금은 기업이 부담금만 내고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면죄부로 역할 할 가능성도 있음. 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에는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전술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고용률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행강제금과 같은 네거티브 방식보다 고용이행률이 높은 기업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의 효용성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됨.

- 기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
 - 인턴은 실적으로 인정이 안됨. 인턴경험을 통해서도 취업경쟁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음. 인턴도 의무고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다만, 이 경우는 고용인원 수에 일정한 할인을 적용할 수 있음(예. 1명의 인턴을 고용할 경우 0.5명으로 산정)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의 경우 월단위로 산정됨. 반면에 보훈대상자의 경우 연단위로 산정되어 1년 미만 계약직은 의무고용비율에 산정되지 못하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함. 상기 인턴과 마찬가지로 할인된 고용 실적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제3장

합리적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제1절 취업지원실시기관 현황과 의무고용 실태

제2절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제 3 장 합리적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제1절 취업지원실시기관 현황과 의무고용 실태

□ 이용 자료

- 취업지원실시기관 현황과 의무고용 실태 분석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 받은 취업지원실시기관 명단(2022년 11월 1일 기준)을 사용하였음.
 - 2022년 11월 1일 현재 취업실시기관은 총 17,209개소이며, 국가기관 923개소, 공공기관 2,241개소, 일반기업 12,792개소, 사립학교 1,253개소로 구성
 - 국가기관, 공립학교, 지자체 등을 포괄하는 국가기관 등의 비율은 5.3%, 공공기관과 공기업체를 포괄하는 공공기관 등의 비율은 13.0%, 그리고 일반기업체와 사립학교가 각각 74.3%와 7.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3-1〉 취업지원실시기관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비율
국가기관 등	국가기관	608	3.5
	공립학교	51	0.3
	지자체(교육청 포함)	264	1.5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447	2.6
	공기업체	1,794	10.4
민간	일반기업체	12,792	74.3
	사립학교	1,253	7.3
계		17,209	100.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

1. 일반 현황

□ 기관 유형별 의무고용비율

- 일반기업의 경우 4% 적용 기관이 38.8%로 가장 많고, 3% 적용 기관 33.2%, 5% 적용 기관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립학교는 모두 10% 적용을 받고 있음.

□ 의무고용비율별 기관 유형

- 3% 적용 기관은 100% 일반기업체
- 4% 적용 기관에는 공공기관 5.9%, 일반기업체 94.1%가 분포
- 5% 적용 기관에는 공공기관 13.1%, 일반기업체 86.9%가 분포
- 6% 적용 기관에는 공공기관 44.2%, 일반기업체 55.8%가 분포
- 7% 적용 기관에는 공공기관 0.2%, 일반기업체 99.8%가 분포
- 8% 적용 기관에는 공공기관 94.4%, 일반기업체 5.6%가 분포
- 9% 적용 기관은 100% 공공기관
- 10% 적용 기관은 100% 사립학교
- 17% 적용 기관은 100% 국가기관 등

〈표 3-2〉 취업지원 실시기관 의무고용비율별,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

의무고용 비율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반기업		사립학교		계	
3	0 (0.0)	0.0	0 (0.0)	0.0	4,245 (100.0)	33.2	0 (0.0)	0.0	4,246 (100.0)	24.7
4	0 (0.0)	0.0	309 (5.9)	13.8	4,963 (94.1)	38.8	0 (0.0)	0.0	5,272 (100.0)	30.6
5	0 (0.0)	0.0	373 (13.1)	16.6	2,471 (86.9)	19.3	0 (0.0)	0.0	2,844 (100.0)	16.5
6	0 (0.0)	0.0	363 (44.2)	16.2	458 (55.8)	3.6	0 (0.0)	0.0	821 (100.0)	4.8
7	0 (0.0)	0.0	1 (0.2)	0.0	585 (99.8)	4.6	0 (0.0)	0.0	586 (100.0)	3.4
8	0 (0.0)	0.0	1,181 (94.4)	52.7	70 (5.6)	0.6	0 (0.0)	0.0	1,251 (100.0)	7.3
9	0 (0.0)	0.0	13 (100.0)	0.6	0 (0.0)	0.0	0 (0.0)	0.0	13 (100.0)	0.1
10	0 (0.0)	0.0	0 (0.0)	0.0	0 (0.0)	0.0	1,253 (100.0)	100.0	1,253 (100.0)	7.3
17	923 (100.0)	99.4	0 (0.0)	0.0	0 (0.0)	0.0	0 (0.0)	0.0	923 (100.0)	5.3
합계	923 (5.4)	100.0	2,241 (13.0)	100.0	12,792 (74.3)	100.0	1,253 (7.3)	100.0	17,209 (100.0)	100.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현행 법령(제30조)에서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로 하되,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조업체(분류번호 제10호에서 제33호까지)는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로 한정

○ 2022년 1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총 12,209개 업체 중 63개 업체는 종사자 수가 0명으로 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함.

- 종사자 수가 0명인 63개 기관은 유형별로 일반기업체 7개소, 국가기관 54개소로 구성됨. 여기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산하기관은 종사자 수가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이나, 국방부 소속의 예하 부대들은 종사자 군인이나 군무원 이외의 종사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분류됨. 이들의 경우 취업실시기관에서 제외 필요

○ 비제조업체는 2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20인 미만 기관은 존재할 수 없지만 20인 미만 기관이 1,393개소(8.1%)임.

- 종사자 수가 20명 미만인 기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지자체)이 541개, 공공기관(공기업) 57개, 일반기업 213개, 사립학교 582개로 확인됨. 이중 국가기관과 사립학교를 제외하더라도 270개 기관에 달함.
- 또한 법령에서 제조업체는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로 한정되지만 200인 이하의 제조업체도 359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역시 확인이 필요함.
 - 최초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등록될 당시에는 200인 이상이였다가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유를 불문하고 200인 미만이라도 실제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의무고용을 면제할 필요는 없음. 오히려 전반적으로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제조업 200인 기준의 하향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2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기관이 4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기관이 19.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비제조업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500인 이상이 2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인에서 300인 미만이 27.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3〉 제조업-비제조업 별 사업장 규모별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비제조업	(비율)	제조업	(비율)	전체	(비율)
0인	62	0.4	1	0.1	63	0.4
20인 미만	1,388	9.0	5	0.3	1,393	8.1
20~99인	7,448	48.5	105	5.7	7,553	43.9
100~199인	3,069	20.0	248	13.4	3,317	19.3
200~299인	1,232	8.0	512	27.6	1,744	10.1
300~399인	589	3.8	282	15.2	871	5.1
400~499인	356	2.3	180	9.7	536	3.1
500인 이상	1,212	7.9	520	28.1	1,732	10.1
전체	15,356	100.0	1,853	100.0	17,209	100.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기관 유형별로 종사자 수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먼저, 국가기관 외는 모두 비제조업으로 구성됨. 가장 구성비가 큰 사업장 규모는 20인 이하로 절반이 넘는 58.6%를 차지하고 있음. 20인 이상 100인 이하도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은 수준임.
- 공공기관과 공기업체의 경우는 4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비제조업에 속하는데,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을 넘는 57.7%를 차지하고 있음.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1.0%를, 그리고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8.7%로 나타남. 제조업 4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이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확인됨.
- 일반기업체의 경우 비제조업의 비중이 더 큰 가운데, 비제조업 사업장 중 절반을 조금 넘는 업체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특징을 가짐. 제조업의 경우는 500인 이상과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의 55.7%를 차지하고 있음.
- 사립학교는 전체적으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표 3-4〉 기관 유형별 제조업-비제조업 별 사업장 규모별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국기기관 외		공공기관, 공기업체				일반기업체				사립학교	
	비제조업(비율)	제조업(비율)	비제조업(비율)	제조업(비율)	비제조업(비율)	제조업(비율)	비제조업(비율)	제조업(비율)	비제조업(비율)	제조업(비율)	비제조업(비율)	제조업(비율)
0명	54	5.9	-	-	-	-	8	0.1	1	0.1	-	-
1~19명	541	58.6	57	2.6	0	0.0	208	1.9	5	0.3	582	46.5
20~99명	274	29.7	1,232	55.1	0	0.0	5,395	49.3	105	5.7	547	43.7
100~199명	24	2.6	470	21.0	1	25.0	2,503	22.9	247	13.4	72	5.8
200~299명	4	0.4	145	6.5	0	0.0	1,053	9.6	512	27.7	30	2.4
300~399명	5	0.5	90	4.0	0	0.0	482	4.4	282	15.3	12	1.0
400~499명	-	-	49	2.2	0	0.0	303	2.8	180	9.7	4	0.3
500명 이상	21	2.3	194	8.7	3	75.0	991	9.1	517	28.0	6	0.5
전체	923	100.0	2,237	100.0	4	100.0	10,943	100.0	1,849	100.0	1,253	100.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유형별 주요 현황

- 의무고용비율 적용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관 유형별로 평균 종사자 수와 평균 의무고용비율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17% 적용을 받는 기타국가기관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2조에 의거, 국가기관의 특별채용 직렬(예. 방호, 운전, 위생, 조리, 우정, 조경, 환경 등)에 한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당 직렬 종사자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1명 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됨. 동 법에서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을 채용인원으로 하기 때문임(제37조의 2).
 - 그러나 기타국가기관은 공공부문이면서도 일반기업체(15.7%)보다 낮은 9.6%의 고용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평균 종사자 수가 5.2명으로 대부분의 경우 1명만 채용하면 의무고용을 충족할 수 있지만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임
- 한편, 17%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타공공 공립학교의 평균 종사자 수는 11.7명으로 법정인원은 1명(1.99명)으로 이른바 ‘모 아니면 도’가 되는 상황

- 고용이행률이 가장 높은 기관 유형은 지방자치단체로 115.9%이고, 다음으로 103.3%의 공립학교, 85%의 공기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립학교의 평균 고용이행률이 높은 것은 전술한 것과 같이 평균 법정 인원이 1명으로 1명만 취업이 되면 100%가 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음.
- 고용이행률이 가장 낮은 기관 유형은 기타국가기관으로 9.6%임. 다음으로 일반기업체 15.7%, 사립학교 2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국가기관의 평균 고용이행률이 극도로 낮은 것은 전술한 것과 같이 종사자 수가 적어 평균 법정 인원이 0명인 것과 관련이 있음.

〈표 3-5〉 취업지원 실시기관 유형별 평균 종사자 수

단위: 개소, %

구분	의무고용비율 (평균)	기관 수	기관 비율	평균 종사자 수	고용이행률
공공기관	5.3	447	2.6	822.3	75.4
공기업체	7.0	1,794	10.42	183.6	85.0
공립학교	17	51	0.3	11.7	103.3
교육자치단체	17	18	0.1	754.0	75.6
기타국가기관	17	19	0.11	5.2	9.6
사립학교	10	1,253	7.28	46.1	29.7
사법부	17	21	0.12	70.7	55.9
일반기업체	4.1	12,792	74.33	315.4	15.7
입법부	17	2	0.01	106.0	48.5
중앙행정기관	17	566	3.29	44.7	76.0
지방자치단체	17	246	1.43	43.6	115.9
전체	5.5	17,209	100	281.3	29.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취업지원 실시기관 유형별 취업 실태

- 전체적으로 취업인원이 없는 기관 수는 9,564개소로 전체의 55.6%를 차지하고, 취업인원이 1명 이상인 기관 수는 7,645개소로 전체의 44.4%에 불과함.

○ 취업인원이 있는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자치단체가 100%, 지방자치단체 97.2%, 공기업체 90%, 공공기관 85.9% 등의 순이고,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기관 유형은 일반기업체로 34.2%이며, 기타국가기관(42.1%)과 사립학교(43.0%)는 취업인원이 있는 기관의 비율이 절반이 되지 않음.

〈표 3-6〉 취업지원실시기관 유형별 평균 종사자 수

단위: 개소, %

구분	취업인원 없음		취업인원 있음		전체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공공기관	63	14.1	384	85.9	447	100.0
공기업체	172	9.6	1,622	90.4	1,794	100.0
공립학교	10	19.6	41	80.4	51	100.0
교육자치단체	0	0.0	18	100.0	18	100.0
기타국가기관	11	57.9	8	42.1	19	100.0
사립학교	714	57.0	539	43.0	1,253	100.0
사법부	6	28.6	15	71.4	21	100.0
일반기업체	8,411	65.8	4,381	34.2	12,792	100.0
입법부	1	50.0	1	50.0	2	100.0
중앙행정기관	169	29.9	397	70.1	566	100.0
지방자치단체	7	2.8	239	97.2	246	100.0
전체	9,564	55.6	7,645	44.4	17,209	100.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2. 의무고용비율별 현황

가. 총괄

□ 의무고용비율별 고용이행률 현황

○ 의무고용비율별 고용이행률은 10%를 적용받는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이행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 그러나 많은 기관이 분포하는 3~5% 적용 기관의 고용이행률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의무고용 부담이 낮은 기관의 실제 이행률이 낮은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이는 두 가지 측면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함. 하나는 의무고용 이행률 제고를 위해 이들 기관의 구성과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행률은 낮지만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취업지원 실시기관 등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취업실시기관 중 현재 1명 이상 취업인원이 있는 기관은 전체의 43.4%에 불과함. 가장 많은 기관이 분포하는 4% 적용 기관에서 취업인원이 있는 기관의 비율이 38.2%에 불과하고, 다음으로 많은 기관이 분포하는 3% 적용 기관에서는 그 비율이 25.0%에 불과함.

- 한편, 9%가 적용되는 13개 기관(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모두 취업인원이 있으며, 8% 적용 기관의 95.4%에서 취업인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의무고용비율별 취업인원 여부별 분포

단위: 개소, %

의무고용비율	고용이행률	취업인원 없음		취업인원 있음		전체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3	13.2	3,184	75.0	1,062	25.0	4,246	100.0
4	19.0	3,260	61.8	2,012	38.2	5,272	100.0
5	20.5	1,796	63.2	1,048	36.9	2,844	100.0
6	44.6	146	17.8	675	82.2	821	100.0
7	36.9	210	35.8	376	64.2	586	100.0
8	90.8	58	4.6	1,193	95.4	1,251	100.0
9	90.3	0	0.0	13	100.0	13	100.0
10	29.7	714	57.0	539	43.0	1,253	100.0
17	86.2	365	39.8	552	60.2	917	100.0
전체	29.3	9,735	56.6	7,474	43.4	17,209	100.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의무고용비율별 취업자 수 현황

○ 의무고용비율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취업인원이 있는 비율이 낮고, 전체적으로 평균 고용이행률도 낮은 의무고용비율 3~4% 적용 기관에서도 평균 19명에서 29명 정도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3~4% 적용을 받는 업종에 속한 괜찮은 기업(예컨대, 중소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으로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확장할 경우 다수의 취업인원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다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 특성과 취업지원 대상자의 인적자본을 매칭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표 3-8〉 의무고용비율별 취업인원이 있는 기관의 취업자 수 현황

단위: 명

의무고용비율	기관 수 (취업인원 있음)	전체			
		평균	중위	최소	최대
3	1,062	19	1	1	219
4	2,012	29	1	1	232
5	1,048	31	1	1	220
6	675	77	75	1	229
7	376	49	2	1	224
8	1,193	101	111	1	216
9	13	101	93	2	231
10	539	23	1	1	216
17	552	105	111	1	232
전체	7,470	39	1	1	232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나. 의무고용비율별 실태

□ 17% 적용 기관 실태

○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받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전체적으로 취업인원이 없는 기관이 전체의 39.8%로이고, 평균 고용이행률은 86.2%로 나타남. 취업인원이 1명 이상인 기관만 볼 경우 평균 고용이행률은 143.2%로 나타남.

- 고용이행률이 0인 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유형은 기타국가기관(선거관

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으로 약 90%에 달하고, 다음으로 많은 곳은 중앙행정기관(감사원 등)으로 약 60%에 달함.

○ 공립학교(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공립전문대학, 공립대학)의 경우 평균 고용이행률은 100%가 넘지만 약 40%에 달하는 학교에서는 취업인원이 없는 극단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극단적 분포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술한 것과 같이 작은 종사자수에 비해 높은 의무고용비율이 적용된 결과로 판단됨.

〈표 3-9〉 의무고용비율 17%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고용이행률 0 기관 수	(비율)	고용이행률(전체)		고용이행률 (0% 기관 제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공립학교	51	21	41.2	103.3	100.0	128.5	100.0
교육자치단체	18	0	0.0	75.6	68.0	75.6	68.0
기타국가기관	18	16	88.9	10.2	0.0	26.1	0.0
사법부	21	6	28.6	55.9	18.0	78.2	57.0
입법부	2	1	50.0	48.5	48.5	97.0	97.0
중앙행정기관	564	314	55.7	76.1	0.0	108.6	100.0
지방자치단체	243	7	2.9	115.6	111.0	119.0	114.0
계	917	365	39.8	86.2	85.0	110.9	100.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10% 적용 기관 실태

○ 총 1,253개 사립학교 중 고용이행률이 0%인 학교가 714개로 전체의 57%에 달함.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고용이행률이 0%이며, 평균 고용이행률은 29.7%로 파악됨. 그러나 취업인원이 1명 이상인 학교의 고용이행률은 평균 69%로 크게 증가함.

- 사립학교의 경우 취업인원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크게 나뉘지고, 취업인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 70%에 가까운 고용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취업인원이 전혀 없는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고

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 면담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3-10〉 의무고용비율 10%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고용이행률 0 기관 수	(비율)	고용이행률(전체)		고용이행률 (0% 기관 제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기타사립학교	47	28	60.0	22.0	0.0	54.4	50.0
사립고등학교	656	447	68.1	27.5	0.0	86.5	100.0
사립대학교	180	37	20.6	36.5	33.0	46.0	41.0
사립전문대학교	145	35	24.1	40.4	33.0	53.3	47.5
사립중학교	191	143	74.9	24.2	0.0	96.4	100.0
사립초등학교	34	24	70.6	30.4	0.0	103.3	100.0
계	1253	714	57.0	29.7	0.0	69.0	60.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9% 적용 기관 실태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체 13개 기관 모두 취업자가 존재하며 각각의 평균 고용이행률은 98.2%와 64.0%로 전체적으로 높은 고용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 이들 기관의 평균 종사자 수는 4,305명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특징이 있음.

〈표 3-11〉 의무고용비율 9%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고용이행률 0 기관 수	(비율)	고용이행률(전체)		고용이행률 (0% 기관 제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공공기관	10	0	0.0	98.2	101.5	98.2	101.5
공기업체	3	0	0.0	64.0	71.0	64.0	71.0
계	13	0	0.0	90.3	100.0	90.3	100.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8% 적용 기관 실태

- 일반기업체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8% 적용기관의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공공기관은 모두 취업자가 존재하고, 평균 고용이행률은 90.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3.3%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체는 1명 이상의 고용을 하고 있으며, 평균 고용이행률은 94.0%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한편, 일반기업체에서 취업자가 없는 기업의 비율이 28.65에 달하며, 전체 고용이행률은 38.9%로 공공부문 기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들보다 의무고용비율이 낮은 일반기업체의 고용이행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취업자가 있는 업체의 평균 고용이행률은 54.4%로 나타남.

〈표 3-12〉 의무고용비율 8%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고용이행률 0 기관 수	(비율)	고용이행률(전체)		고용이행률 (0% 기관 제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공공기관	28	0	0.0	90.5	97.0	90.5	97.0
공기업체	1153	38	3.3	94.0	100.0	97.2	100.0
일반기업체	70	20	28.6	38.9	39.5	54.4	50.0
계	1251	58	4.6	90.8	100.0	95.2	100.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7% 적용 기관 실태

-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1개소의 고용이행률은 78%로 높은 수준을 보임.
 - 해당 기관의 총 직원수는 1,141명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속한다는 특징이 있음.
- 일반기업체의 경우 약 36%에서 취업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평균 고용이행률은 36.8%로 일반기업체 전체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임. 취업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평균 고용이행률은 57.5%로 크게 높아짐.
 - 여기에 해당하는 일반기업체의 업종은 대분류 기준으로 담배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융업으로 평균 종사자 수가 약 360명으로 대규모 사

업장이라는 특징이 있음.

〈표 3-13〉 의무고용비율 7%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고용이행률 0 기관 수	(비율)	고용이행률(전체)		고용이행률 (0% 기관 제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공공기관	1	0	0.0	78.0	78.0	78.0	78.0
일반기업체	585	210	35.9	36.8	22.0	57.4	50.0
계	586	210	35.8	36.9	22.0	57.5	50.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6% 적용 기관 실태

- 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체는 취업자가 없는 기관 비율이 각각 9.6%와 16.3%이며, 전체 평균 고용이행률은 각각 60.4%와 70.2%로 나타남.
- 일반기업체의 경우 21% 정도가 취업자가 없으며, 전체 평균 고용이행률은 27.2%로 이들보다 의무고용비율이 높은 업체들에 비해서 낮은 고용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취업자가 있는 기업으로 한정 할 경우 평균 고용이행률은 34.4%로 높아지지만 의무고용비율이 이보다 높은 사업장에 비해서 그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음.
 - 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일반기업체들의 경우 취업자가 없는 기업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취업자가 있는 기업들의 고용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전반적인 기업 특성과 취업수요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표 3-14〉 의무고용비율 6%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고용이행률 0 기관 수	(비율)	고용이행률(전체)		고용이행률 (0% 기관 제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공공기관	136	13	9.6	60.4	57.5	66.8	67.0
공기업체	227	37	16.3	70.2	80.0	83.8	89.5
일반기업체	458	96	21.0	27.2	19.0	34.4	28.0
계	821	146	17.8	44.5	33.0	54.2	47.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5% 적용 기관 실태

○ 5% 적용 기관 중 공공기관과 공기업체의 고용이행률이 0인 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각각 22.5%와 30.6%임. 평균 고용이행률은 각각 69.6%와 52.3%의 수준이며, 취업자가 있는 기관으로 한정할 경우 평균 고용이행률은 각각 89.9%와 75.3%로 크게 증가함.

- 이는 해당 영역 공공부문 사업장의 경우 취업자가 없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의무고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취업자가 없는 사업장의 주된 업종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업(56.9%), 교육서비스업(11.8%), 보건업(17.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복지관, 공공병원, 청소년재단 등을 중심으로 실태파악과 취업수요의 특성 분석 필요

○ 한편 일반기업체의 경우 약 70%의 업체에서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고용이행률이 14.6%에 불과함. 취업자가 있는 업체만 한정하면 평균 고용이행률은 46.4%로 나타나 이 영역에 해당하는 일반기업체 중 취업자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함.

- 취업자가 없는 사업장의 주된 업종을 보면 종합건설업(31.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17.9%),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5%), 전문직별 공사업(7.8%) 등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들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함.

〈표 3-15〉 의무고용비율 5%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고용이행률 0 기관 수	(비율)	고용이행률(전체)		고용이행률 (0% 기관 제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공공기관	151	34	22.5	69.6	61.0	89.9	94.0
공기업체	222	68	30.6	52.3	40.0	75.3	64.5
일반기업체	2471	1694	68.6	14.6	0.0	46.4	33.0
계	2844	1796	63.2	20.5	0.0	55.5	42.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4% 적용 기관 실태

- 공공부문에서 취업자가 없는 사업장의 비율은 약 13~16%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이들의 평균 고용이행률은 94.8%와 86.7%로 높은 수준임. 취업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할 경우 평균 고용이행률은 100%를 상회함.
- 일반기업체의 경우 취업자가 없는 사업장의 비율이 약 6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전체 평균 고용이행률도 14.6%로 전체 일반기업체 평균 고용이행률(15.7%)보다도 낮은 수준임. 취업자가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고용이행률은 49.8%로 크게 상승함.
 - 해당 영역의 일반기업체의 문제는 취업인원이 없는 업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과 더불어 취업인원이 있는 업체의 경우도 고용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취업인원이 없는 업체의 업종 분포를 보면 보건업(32.9%), 도매 및 상품 중개업(18.7%), 사회복지 서비스업(9.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업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의무고용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표 3-16〉 의무고용비율 4%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고용이행률 0 기관 수	비율	고용이행률(전체)		고용이행률 (0% 기관 제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공공기관	120	16	13.3	94.8	100.0	109.3	100.0
공기업체	189	30	15.9	86.7	100.0	103.1	100.0
일반기업체	4963	3214	64.8	14.6	0.0	41.5	30.0
계	5272	3260	61.8	19.0	0.0	49.8	33.0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 3% 적용 기관 실태

- 취업자가 없는 사업장의 비율이 75%에 달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 평균 고용이행률은 13.2%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취업자가 있는 사업

장으로 한정할 경우 평균 고용이행률은 52.9%로 크게 상승함.

- 해당 영역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4곳 중 1곳에서만 의무고용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의무고용 이행에 대한 점검과 실태 파악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 취업인원이 없는 업체의 업종 분포를 보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운수 및 창고업)이 40.6%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다음으로 환경 정화 및 복원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이 17.4%,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시설 서비스업이 9.1%,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7〉 의무고용비율 3% 적용별 기관 취업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고용이행률 0 기관 수	(비율)	고용이행률(전체)		고용이행률(0% 기관 제외)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일반기업체	4245	3184	75.0	13.2	0.0	52.9	40.0
계	4245	3184	75.0	13.2	0.0	52.9	40.0

주: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식회사가 3% 적용 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나 입력 오류로 추정되어 삭제하였음.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분석

4. 업종별 현황

가. 총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는 79개의 업종이 제시되어 있음. 아래 표의 66번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별표 9]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어 총 80개 업종으로 구성하였음.

- 해당 업종은 부동산업(28번. 대분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27번. 중분류)의 하위 분류 업종임.

〈표 3-18〉 취업지원 실시기관 업종 분류

연번	업종분류(기준)	연번	업종분류(기준)
1	1차 금속 제조업	41	수상 운송업
2	가구 제조업	42	숙박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3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4	식품 제조업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5	어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6	연구개발업
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7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	광업 지원 서비스업	4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9	교육 서비스업	49	음료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50	음식점 및 주점업
11	금속 광업	5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5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	금융업	5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기타 개인 서비스업	5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5	임대업(부동산 제외)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6	임업
17	기타 제품 제조업	57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	농업	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	담배 제조업	60	전기장비 제조업
21	도매 및 상품중개업	61	전문서비스업
22	도시철도 운송업	62	전문직별 공사업
2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6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4	방송업	64	정보서비스업
25	보건업	65	종합 건설업
26	보험 및 연금업	66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27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7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28	부동산업	68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	비금속 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69	철도운송업
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0	출판업
3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2	사업지원 서비스업	7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3	사회복지 서비스업	73	통신업
34	생명 보험업	7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7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6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7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소매업(자동차 제외)	77	항공 운송업
38	손해 보험업	78	협회 및 단체
39	수도사업	7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0	수리업	8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주: 연번은 업종코드가 아니라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임의로 부여한 번호임.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7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2022년 9월 11일 인출.

2)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업종별 법정취업자 수와 의무고용이행률은 아래 표와 같음(국가기관 등, 사립학교를 제외한 15,033개소 기준임).

○ 평균 법정취업자 수 기준으로 1위에서 5위까지의 업종을 보면, 1위는 철도운송업(286명)이고, 2위는 도시철도 운송업(168명), 3위는 보험 및 연금업(99명), 4위는 담배 제조업(88명), 그리고 5위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1명)임.

- 6위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7위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위 기타제품 제조업, 9위 항공 운송업, 10위 통신업으로 10위권에 3개의 제조업종을 제외하면 모두 비제조업이라는 특징이 있음.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에서 의무고용을 수용할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줌.

○ 평균 의무고용이행률 기준으로 보면, 1위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120.0%)으로 의무고용이행 기준을 초과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위는 광업지원 서비스업(92.5%), 3위는 금융업(82.0%), 4위는 도시철도 운송업(75.7%), 5위는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5.3%)으로 나타남.

〈표 3-19〉 취업지원 실시기관 업종별 평균 취업자 수와 평균 고용이행률

단위: 개소, 명, %

업종번호	평균 취업자수	취업자 순위	평균 고용이행률	고용이행률 순위	업종번호	평균 취업자수	취업자 순위	평균 고용이행률	고용이행률 순위
1	17	13	30.6	32	41	1	73	15.7	63
2	3	49	22.3	44	42	1	71	9.5	73
3	-	80	0.0	80	43	4	36	32.4	23
4	3	54	31.8	25	44	5	31	22.2	46
5	5	30	19.4	54	45	1	68	19.8	51
6	9	24	25.8	38	46	5	32	33.4	20
7	8	25	65.0	6	47	5	33	45.5	15
8	22	11	92.5	2	48	0	77	7.8	76
9	3	50	41.1	16	49	9	23	8.6	74
10	3	46	33.0	21	50	4	38	2.5	78
11	9	19	23.5	41	51	3	51	17.9	57
12	13	16	28.0	35	52	5	34	14.1	67
13	9	22	82.0	3	53	3	47	31.4	27

82 보훈 의무고용제도 발전방안

14	2	64	20.2	48	54	4	43	30.6	31
15	5	35	16.5	61	55	1	72	14.7	66
16	34	8	30.4	33	56	2	62	31.7	26
17	1	69	18.3	56	57	1	76	13.9	68
18	4	39	32.1	24	58	17	14	28.1	34
19	2	63	22.9	43	59	61	5	48.8	14
20	88	4	53.0	11	60	6	27	15.3	65
21	2	59	19.1	55	61	4	41	27.8	36
22	168	2	75.7	4	62	3	48	5.0	77
23	2	65	20.6	47	63	13	17	16.5	62
24	2	58	60.8	8	64	2	56	20.1	49
25	2	57	12.4	71	65	2	55	8.4	75
26	99	3	56.4	9	66	2	61	12.5	70
27	39	6	120.0	1	67	3	45	17.2	58
28	9	20	33.9	19	68	3	52	65.3	5
29	0	79	23.8	39	69	286	1	64.0	7
30	6	28	30.9	30	70	1	70	9.5	72
31	3	44	23.8	40	71	4	42	17.0	60
32	2	60	19.8	50	72	37	7	54.4	10
33	1	74	15.6	64	73	26	10	19.4	53
34	15	15	27.4	37	74	6	29	52.9	12
35	10	18	22.9	42	75	7	26	32.5	22
36	4	37	31.0	29	76	1	66	17.2	59
37	1	67	22.3	45	77	28	9	37.1	18
38	19	12	40.7	17	78	4	40	49.3	13
39	1	75	13.3	69	79	9	21	31.1	28
40	0	78	1.3	79	80	3	53	19.5	52
					전체	5		25.8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고용비율별 현황

□ 고용비율 3% 적용 업종

○ 비제조업 19개 업종과 제조업 7개 업종의 총 26개 업종으로 구성

〈표 3-20〉 의무고용비율 3% 기관의 업종별, 기업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명, %

업종번호	유형	기업 수(비율)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전체	공공	일반	(공공)	(일반)	전체	공공	일반	전체	공공	일반
3	비 제 조	1	-	1	0.0	100.0	-	-	-	0.0	-	0.0
5		102	9	93	8.8	91.2	5	21	4	19.4	48.3	16.6
8		2	1	1	50.0	50.0	22	42	1	92.5	135.0	50.0
14		291	15	276	5.2	94.8	2	11	1	20.2	139.1	13.7
18		119	38	81	31.9	68.1	4	8	2	32.1	57.2	20.4
24		15	1	14	6.7	93.3	2	3	2	60.8	20.0	63.7
31		434	50	384	11.5	88.5	3	15	2	23.8	94.2	14.6
32		357	45	312	12.6	87.4	2	8	1	19.8	91.8	9.5
35		9	2	7	22.2	77.8	10	45	0	22.9	97.5	1.6
45		25	1	24	4.0	96.0	1	12	1	19.8	109.0	16.1
47		111	21	90	18.9	81.1	5	15	3	45.5	74.6	38.7
48		1,504	5	1,499	0.3	99.7	0	18	0	7.8	60.8	7.6
54		30	1	29	3.3	96.7	4	53	2	30.6	98.0	28.3
56		6	5	1	83.3	16.7	2	2	-	31.7	38.0	0.0
61		158	20	138	12.7	87.3	4	16	2	27.8	75.5	20.8
68		70	51	19	72.9	27.1	3	3	1	65.3	78.9	28.8
70		87	-	87	0.0	100.0	1	-	1	9.5	-	9.5
76		194	10	184	5.2	94.8	1	17	1	17.2	119.1	11.6
80		792	36	756	4.5	95.5	3	27	1	19.5	135.9	13.9
2		제 조	15	-	15	0.0	100.0	3	-	3	22.3	-
4	11		-	11	0.0	100.0	3	-	3	31.8	-	31.8
10	102		-	102	0.0	100.0	3	-	3	33.0	-	33.0
17	24		-	24	0.0	100.0	1	-	1	18.3	-	18.3
23	10		-	10	0.0	100.0	2	-	2	20.6	-	20.6
51	53		1	52	1.9	98.1	3	1	3	17.9	17.0	17.9
53	36		-	36	0.0	100.0	3	-	3	31.4	-	31.4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고용비율 4% 적용 업종

○ 비제조업 16개 업종과 제조업 5개 업종의 총 21개 업종으로 구성

〈표 3-21〉 의무고용비율 4% 기관의 업종별, 기업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명, %

업종번호	유형	기업 수(비율)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전체	공공	일반	(공공)	(일반)	전체	공공	일반	전체	공공	일반
7	비 제 조	15	15	-	100.0	0.0	8	8	-	65.0	65.0	-
9		183	67	116	36.6	63.4	3	7	1	41.1	88.7	13.6
21		1,033	9	1,024	0.9	99.1	2	8	2	19.1	44.1	18.9
25		1,526	134	1,392		91.2	2	1	1	12.4	60.2	7.8
27		2	2	-	100.0	0.0	39	39	-	120.0	120.0	-
29		21	-	21	0.0	100.0	0		0	23.8	-	23.8
33		445	103	342	23.1	76.9	1	2	0	15.6	35.3	9.6
37		404	8	396	2.0	98.0	1	8	1	22.3	75.8	21.2
41		98	-	98	0.0	100.0	1		1	15.7	-	15.7
42		279	4	275	1.4	98.6	1	4	1	9.5	51.0	8.9
50		35	-	35	0.0	100.0	4		4	2.5	-	2.5
55		26	1	25	3.8	96.2	1	1	1	14.7	13.0	14.8
64		47	6	41	12.8	87.2	2	7	2	20.1	70.0	12.8
66		167	8	159	4.8	95.2	2	28	0	12.5	65.9	9.8
71		398	11	387	2.8	97.2	4	15	3	17.0	78.5	15.3
75		4	2	2	50.0	50.0	7	14	-	32.5	65.0	0.0
16	제 조	45	-	45	0.0	100.0	34		34	30.4	-	30.4
36		38	-	38	0.0	100.0	4		4	31.0	-	31.0
58		251	-	251	0.0	100.0	17		17	28.1	-	28.1
63		289	-	289	0.0	100.0	13		13	16.5	-	16.5
74		30	-	30	0.0	100.0	6		6	52.9	-	52.9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고용비율 5% 적용 업종

○ 비제조업 17개 업종과 제조업 4개 업종의 총 21개 업종으로 구성

〈표 3-22〉 의무고용비율 5% 기관의 업종별, 기업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명, %

업종번호	유형	기업 수(비율)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전체	공공	일반	(공공)	(일반)	전체	공공	일반	전체	공공	일반
11	비 제 조	4	-	4	0.0	100.0	9	-	9	23.5	-	23.5
19		28	6	22	21.4	78.6	2	7	0	22.9	96.7	2.7
22		9	6	3	66.7	33.3	168	246	13	75.7	92.8	41.3
28		131	31	100	23.7	76.3	9	36	1	33.9	79.2	19.9
34		24	-	24	0.0	100.0	15	-	15	27.4	-	27.4
38		23	3	20	13.0	87.0	19	5	21	40.7	89.3	33.4
40		50	-	50	0.0	100.0	0	-	0	1.3	-	1.3
43		293	78	215	26.6	73.4	4	14	1	32.4	83.0	14.1
46		214	121	93	56.5	43.5	5	8	1	33.4	48.9	13.3
57		114	-	114	0.0	100.0	1	-	1	13.9	-	13.9
62		151	4	147	2.6	97.4	3	109	0	5.0	75.0	3.1
65		662	13	649	2.0	98.0	2	33	2	8.4	80.7	7.0
67		426	15	411	3.5	96.5	3	63	1	17.2	59.4	15.7
69		7	3	4	42.9	57.1	286	657	8	64.0	96.0	40.0
73		58	-	58	0.0	100.0	26	-	26	19.4	-	19.4
77		29	1	28	3.4	96.6	28	156	24	37.1	98.0	34.9
78		200	82	118	41.0	59.0	4	8	1	49.3	64.4	38.9
6	제 조	80	-	80	0.0	100.0	9	-	9	25.8	-	25.8
15		159	-	159	0.0	100.0	5	-	5	16.5	-	16.5
44		165	1	164	0.6	99.4	5	45	5	22.2	88.0	21.8
49		5	-	5	0.0	100.0	9	-	9	8.6	-	8.6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고용비율 6% 적용 업종

○ 제조업 5개 업종으로 구성

〈표 3-23〉 의무고용비율 6% 기관의 업종별, 기업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명, %

업종번호	유형	기업 수(비율)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전체	공공	일반	(공공)	(일반)	전체	공공	일반	전체	공공	일반
1	제조	94	-	94	0.0	100.0	17	-	17	30.6	-	30.6
52		57	-	57	0.0	100.0	5	-	5	14.1	-	14.1
60		76	-	76	0.0	100.0	6	-	6	15.3	-	15.3
72		19	1	18	5.3	94.7	37	62	36	54.4	78.0	53.1
79		212	-	212	0.0	100.0	9	-	9	31.1	-	31.1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고용비율 7% 적용 업종

○ 비제조업 3개 업종과 제조업 2개 업종의 총 5개 업종으로 구성

〈표 3-24〉 의무고용비율 7% 기관의 업종별, 기업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명, %

업종번호	유형	기업 수(비율)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전체	공공	일반	(공공)	(일반)	전체	공공	일반	전체	공공	일반
12	비제조	169	23	146	13.6	86.4	13	58	6	28.0	75.5	20.5
13		1,518	1,144	374	75.4	24.6	9	7	14	82.0	94.3	44.2
26		28	14	14	50.0	50.0	99	192	7	56.4	88.1	24.7
20	제조	3	-	3	0.0	100.0	88	-	88	53.0	-	53.0
30		49	-	49	0.0	100.0	6	-	6	30.9	-	30.9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고용비율 8% 적용 업종

○ 비제조업 2개 업종으로 구성

〈표 3-25〉 의무고용비율 8% 기관의 업종별, 기업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명, %

업종번호	유형	기업 수(비율)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전체	공공	일반	(공공)	(일반)	전체	공공	일반	전체	공공	일반
39	비	3	-	3	0.0	100.0	1		1	13.3		13.3
59	제조	79	13	66	16.5	83.5	61	340	6	48.8	90.3	40.6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5. 기업규모별 현황

가. 총괄

□ 국가기관 등과 사립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 공기업체, 그리고 일반기업체(총 15,033개소)의 기업규모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22년 5월 현재 기업집단 포털에 등재되어 있는 대기업 수는 2,886개(76개 기업집단의 계열사)임.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는 815개소의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이 중 공공기관(공기업체)는 3개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공 받은 2020년 결산 매출액 기준 중견기업 수는 5,526개임.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는 1,598개소의 중견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이 중 공공기관(공기업체)는 2개소

○ 중소기업의 경우는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2020년 현재 7,286천 개로 파악됨. 이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모두 중소기업 외로 분류하였으며(총, 14,796개), 이 중 국가기관 등과 사립학교를 제외한 실제 중소기업 수는 12,620개에 달함.

□ 이 중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대기업 815개(5.4%), 중견기업 1,598개

- (10.6%)임. 이들을 제외한 12,620개(83.9%)는 중소기업 외로 분류하였음.
- 2,886개 대기업 중 815개(28.2%)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 중에서도 종사자 수가 적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함.
 - 대기업 중 종사자 수 20인 미만 업체가 1,221개소, 제조업 중 200인 미만 업체가 253개소로 총 1,476개소가 취업지원 실시기관 요건을 갖추지 못함. 따라서 요건을 갖춘 대기업의 취업지원 실시기관 편입률은 약 57%에 달함.
 - 이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임. 종사자 수 기준으로 취업지원 실시기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의 수는 전체 5,526개소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짐작됨.
 -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 공공부문에 속하는 기업은 각각 3개와 2개로, 공공부문의 대부분의 기업은 중소기업 외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됨.
 - 민간부문 12,792개 일반기업체 중 대기업은 812개(6.3%), 중견기업은 1,596개(12.5%), 중소기업 외는 10,384개(81.2%)임.

〈표 3-26〉 기업규모별 취업지원 실시기관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비율	공공부문	비율	민간부문	비율
중소기업 외	12,620	83.9	2,236	99.8	10,384	81.2
중견기업	1,598	10.6	2	0.1	1,596	12.5
대기업	815	5.4	3	0.1	812	6.3
합계	15,033	100.0	2,241	100.0	12,792	100.0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기업규모 분류상 고려할 사항

- 기업규모별 분류에 있어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평균적으로 자산규모가 큰 은행, 증권, 보험 등 전업 금융회사는 제외된다는 점임.

- 이들 전업 금융회사는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이들 회사의 자산에는 고객들의 예금이나 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 자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음.
- 현재 취업지원 실시기관에는 대분류 기준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5가지 업종이 있음(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들 금융 관련 5개 업종은 평균 취업자 수와 평균 고용이행률에 있어서 80개 업종 중에서 상위층에 속하고 있음.
 - 또한 같은 고용비율을 적용받는 업종 평균에 비해 평균 취업자 수가 많고, 평균 고용이행률의 경우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1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 고용비율 적용 업종의 평균을 크게 상회함. 동 업종은 평균 취업자 수 기준 순위로는 13위로 높은 수준임.
 - 고용이행률의 순위가 낮은 것은 전체적으로 이들 금융관련 업종의 종사자 수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임. 취업자 수의 순위는 고용이행률 순위보다 전체적으로 높음.
- 따라서 금융관련 업종은 전부 또는 일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는 대기업에 준하는 고용비율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대기업 평균 고용비율은 28.1%).
 - 아래 표에서 음영 표시된 부분은 그 아래 표의 대기업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들임. 즉, 평균 취업자 수 측면에서는 보험 및 연금업과 손해보험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평균 고용이행률 측면에서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손해보험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표 3-27〉 금융관련 5개 업종 취업실적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고용비율	평균 취업자 수	(순위)	평균 고용이행률	(순위)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12)	7%	13	(16)	28.0	(35)
금융업(13)	7%	9	(22)	82.0	(3)
보험 및 연금업(26)	7%	99	(3)	56.4	(9)
7% 적용기관 평균	7%	12	-	36.9	-
생명보험업(34)	5%	15	(15)	27.4	(37)
손해보험업(38)	5%	19	(12)	40.7	(17)
5% 적용기관 평균	5%	4	-	20.5	-
대기업 평균	-	18	-	28.1	
전체 평균	-	5	-	25.8	-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기업규모별 평균 취업자 수와 고용이행률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취업자 수는 중소기업 외 4.3명, 중견기업 3.4명, 대기업 17.7명으로 기업규모에 완전 비례하지는 않음. 대기업이 평균을 크게 상회함.
- 고용이행률은 중소기업 외 26.3%, 중견기업 20.8%, 대기업 28.1%로 역시 기업규모에 비례하지 않음. 기업규모별 수준 차이가 크지 않음.

〈표 3-28〉 기업규모별 취업지원 실시기관 평균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단위: 명, %

구분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	대기업	전체
평균 취업자 수	4.3	3.4	17.7	4.9
평균 고용이행률	26.3	20.8	28.1	25.8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고용비율별 현황

□ 고용비율 3% 적용 업종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29〉 의무고용비율 3% 기관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명, %

업종 번호	유형	규모별 기업 수				규모별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전체	중소	중견	대	전체	중소	중견	대	전체	중소	중견	대
3	비 제 조	1	1	.	.	-	-	.	.	0.0	0.0	.	.
5		102	77	20	5	5	4	5	37	19.4	19.2	16.9	32.8
8		2	2	.	.	22	22	.	.	92.5	92.5	.	.
14		291	267	6	18	2	1	3	8	20.2	19.0	14.7	40.2
18		119	106	5	8	4	4	3	4	32.1	30.2	28.0	61.0
24		15	4	9	2	2	2	3	-	60.8	66.8	71.7	0.0
31		434	385	24	25	3	3	7	7	23.8	23.1	27.8	31.0
32		357	298	36	23	2	2	2	4	19.8	20.6	12.7	20.5
35		9	7	2	.	10	13	1	.	22.9	27.9	5.5	.
45		25	17	7	1	1	1	2	2	19.8	17.0	25.3	29.0
47		111	71	27	13	5	6	3	6	45.5	46.1	46.5	39.8
48		150 4	1,47 2	20	12	0	0	4	10	7.8	7.1	38.0	40.8
54		30	18	10	2	4	4	2	5	30.6	40.2	10.7	43.5
56		6	5	.	1	2	2	.	-	31.7	38.0	.	0.0
61		158	126	15	17	4	4	4	3	27.8	26.0	46.4	24.1
68		70	67	3	.	3	3	5	.	65.3	67.0	26.7	.
70		87	71	12	4	1	0	3	3	9.5	8.2	14.2	18.8
76		194	186	3	5	1	1	2	1	17.2	17.5	7.0	10.6
80		792	729	45	18	3	2	6	6	19.5	19.3	18.7	26.3
2		제 조	15	4	9	2	3	1	3	10	22.3	25.0	18.9
4	11		7	4	.	3	2	4	.	31.8	28.3	38.0	.
10	102		54	43	5	3	3	3	9	33.0	34.4	31.2	33.6
17	24		15	9	.	1	0	2	.	18.3	6.7	37.6	.
23	10		4	3	3	2	0	1	3	20.6	12.5	26.7	25.3
51	53		34	14	5	3	2	3	9	17.9	13.1	18.2	49.6
53	36		13	22	1	3	2	4	8	31.4	14.8	41.8	19.0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고용비율 4% 적용 업종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30〉 의무고용비율 4% 기관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명, %

업종 번호	유형	규모별 기업 수				규모별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전체	중소	중견	대	전체	중소	중견	대	전체	중소	중견	대
7	비 제 조	15	15	-	-	8	8	-	-	65.0	65.0	-	-
9		183	164	17	2	3	3	2	2	41.1	44.3	11.1	33.5
21		1,033	722	229	82	2	1	2	9	19.1	17.3	20.4	31.7
25		1,526	1,524	2	-	2	2	5	-	12.4	12.4	17.5	-
27		2	2	-	-	39	39	-	-	120.0	120.0	-	-
29		21	19	1	1	0	0	-	-	23.8	26.3	0.0	0.0
33		445	445	-	-	1	1	-	-	15.6	15.6	-	-
37		404	364	22	18	1	1	1	7	22.3	22.8	11.8	25.5
41		98	68	17	13	1	0	1	3	15.7	14.5	21.9	14.2
42		279	242	22	15	1	0	1	7	9.5	9.0	5.5	22.9
50		35	24	7	4	4	0	13	11	2.5	1.4	6.6	2.3
55		26	18	5	3	1	0	2	2	14.7	1.6	66.6	6.7
64		47	39	4	4	2	2	4	0	20.1	22.4	14.5	2.8
66		167	147	13	7	2	2	1	1	12.5	9.7	46.4	7.6
71		398	261	66	71	4	2	4	10	17.0	13.9	21.9	23.8
75		4	4	-	-	7	7	-	-	32.5	32.5	-	-
16		제 조	45	26	12	7	34	14	6	156	30.4	13.3	38.9
36	38		25	4	9	4	4	2	5	31.0	29.8	26.5	36.3
58	251		118	120	13	17	22	5	87	28.1	33.9	20.7	43.5
63	289		166	95	28	13	9	4	74	16.5	15.1	15.5	28.0
74	30		18	12	-	6	6	7	-	52.9	56.1	48.2	-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고용비율 5% 적용 업종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31〉 의무고용비율 5% 기관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명, %

업종 번호	유형	규모별 기업 수				규모별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전체	중소	중견	대	전체	중소	중견	대	전체	중소	중견	대	
11	비 제 조	4	4	.	.	9	9	.	.	23.5	23.5	.	.	
19		28	28	.	.	2	2	.	.	22.9	22.9	.	.	
22		9	9	.	.	168	168	.	.	75.7	75.7	.	.	
28		131	115	7	9	9	10	0	2	33.9	35.8	3.6	33.3	
34		24	16	.	8	15	7	.	31	27.4	27.6	.	27.0	
38		23	16	.	7	19	10	.	38	40.7	47.0	.	26.3	
40		50	41	4	5	0	0	0	3	1.3	0.2	1.3	9.6	
43		293	254	16	23	4	5	1	0	32.4	35.0	25.5	9.3	
46		214	207	5	2	5	5	-	1	33.4	34.5	0.0	5.0	
57		114	90	21	3	1	1	1	1	13.9	16.0	4.5	18.3	
62		151	127	21	3	3	4	0	3	5.0	4.8	1.8	37.0	
65		662	486	129	47	2	1	2	15	8.4	5.9	11.2	27.0	
67		426	355	44	27	3	3	1	7	17.2	16.5	17.3	27.6	
69		7	6	1	.	286	330	25	.	64.0	58.7	96.0	.	
73		58	34	6	18	26	1	3	81	19.4	12.0	26.3	31.2	
77		29	20	1	8	28	9	17	79	37.1	41.6	19.0	28.1	
78		200	200	.	.	4	4	.	.	49.3	49.3	.	.	
6		제 조	80	43	27	10	9	9	8	7	25.8	30.1	19.3	25.1
15			159	81	63	15	5	4	4	10	16.5	15.8	16.6	19.9
44	165		99	44	22	5	4	4	12	22.2	25.8	13.5	23.1	
49	5		2	2	1	9	10	1	22	8.6	12.5	3.5	11.0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고용비율 6% 적용 업종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32〉 의무고용비율 6% 기관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명, %

업종 번호	유형	규모별 기업 수				규모별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전체	중소	중견	대	전체	중소	중견	대	전체	중소	중견	대
1	제조	94	36	37	21	17	25	3	28	30.6	35.0	27.0	29.3
52		57	23	27	7	5	1	8	5	14.1	9.0	17.5	17.7
60		76	47	21	8	6	7	1	18	15.3	17.8	5.6	26.4
72		19	9	4	6	37	55	3	34	54.4	68.4	36.0	45.7
79		212	107	78	27	9	9	6	16	31.1	37.1	19.6	41.0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고용비율 7% 적용 업종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33〉 의무고용비율 7% 기관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명, %

업종 번호	유형	규모별 기업 수				규모별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전체	중소	중견	대	전체	중소	중견	대	전체	중소	중견	대
12	비 제조	169	144	1	24	13	13	-	15	28.0	29.7	0.0	18.6
13		1,518	1,481		37	9	8		26	82.0	83.4		23.6
26		28	27		1	99	103		-	56.4	58.5		0.0
20	제조	3	2		1	88	15		235	53.0	38.5		82.0
30		49	26	18	5	6	8	4	7	30.9	35.2	29.3	14.4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고용비율 8% 적용 업종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34〉 의무고용비율 8% 기관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명, %

업종 번호	유형	규모별 기업 수				규모별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전체	중소	중견	대	전체	중소	중견	대	전체	중소	중견	대
39	비	3	2	1	·	1	1	-	·	13.3	20.0	0.0	·
59	제조	79	32	24	23	61	139	7	9	48.8	45.8	54.5	46.9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6. 취업성과 지표들과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¹⁾

가. 고용이행률

- 종사자 수와 고용이행률 간의 상관관계는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임.
- 의무고용비율과 고용이행률 간 상관관계는 제조업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임.
 - 비제조업에서 상관관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 비제조업에서 의무고용비율 설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할 수 있음.
- 기업규모와 고용이행률 간 상관관계는 민간부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임.
- 매출액과 고용이행률 간에는 중견기업의 경우는 비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 대기업의 경우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1) 상관분석에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2,242개소), 일반기업체(12,792개소)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총 15,033개소).

- 중견기업과 대기업 공히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 부문에서 더 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며, 상관계수의 크기는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3-35〉 고용이행률과 관련 변수들 간 상관관계

구분	전체	비제조업	제조업	공공	민간
종사자 수	0.0310***	0.0309***	0.0636**	-0.0284	0.0601***
의무고용비율	0.4256***	0.4561***	0.0144	0.1511***	0.1380***
기업규모(중소-중견-대)	-0.0119	-0.0141	0.0136	-0.0055	0.1188***
매출액(중견기업)	0.0840***	0.0516	0.1475***	1.000***	0.0848***
매출액(대기업)	0.1177***	0.1087**	0.1823*	-0.6376	0.1181***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제,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법정 취업자 수

- 의무고용이행률의 경우는 법정 인원 대비 법정 취업 인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실제 고용의 크기(고용량)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의무고용비율 부과에 있어서 기관별 고용의 크기로 측정되는 고용여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정 취업자 수를 별도로 살펴보고자 함.
- 종사자 수는 전체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법정 취업자 수와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의무고용비율과 취업자 수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의무고용이행률보다는 약한 상관성을 보임.
 -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부문에서,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그 관계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부문에서의 의무고용비율 설정의 효과가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업규모와 취업자 수 사이에도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여타 지표들에 비해서는 상관계수 값이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음.
- 이 같은 상관관계는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중견기업의 평균 취업자 수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보다 적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음. 위 <표 3-30>에서 보듯 중견기업 평균 취업자 수는 3.4명으로 대기업(17.7%)은 물론 중소기업 외(4.3%)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과 취업자 수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음.
- 고용이행률과의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남.

〈표 3-36〉 취업자 수와 관련 변수들 간 상관관계

구분	전체	비제조업	제조업	공공	민간
종사자 수	0.6940***	0.7356***	0.8257***	0.9428***	0.7325***
의무고용비율	0.1082***	0.1184***	0.0135	0.0210	0.0913***
기업규모(중소-중견-대)	0.0606***	0.0378***	0.1000***	0.0962***	0.1282***
매출액(중견기업)	0.4891***	0.4164***	0.5695***	-1.000***	0.4891***
매출액(대기업)	0.5374***	0.4360***	0.6379***	1.000**	0.5644***

주: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일반기업체만 추출(N=15,033)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상관관계 분석결과의 함의

- 고용이행률과 취업자 수를 이용하여 취업성과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파악해 본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의무고용비율에 따라 취업자 수와 고용이행률이 결정되므로 의무고용비

율은 취업성과와는 상당히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부문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고용이행률의 경우는 비제조업과 민간에서, 취업자 수의 경우는 비제조업에서 의무고용률 설정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이들 영역에서 의무고용률 조정의 효과가 더 민감하게 드러날 가능성을 시사함.

- 둘째, 매출액은 취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의무고용비율 차등 설정의 기준으로 매출액 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그러나 현재로써는 중소기업의 명부와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매출액 수준 자체를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함.
- 셋째, 기업규모의 경우는 취업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의무고용이행률과의 관계에서는 부문별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관성이 약한 특징을 보임. 이는 기업규모 분류는 기업규모별 업종, 종사자 수, 의무고용이행률 등에서 나타나는 편차들로 인해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제2절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1. 방향과 원칙

□ 첫째, 의무고용비율 현실화 및 일자리 공급 확대 동시 추진

- 기업 부담 완화(규제개혁)와 의무고용 실효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음. 실제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업군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무고용 제고를 위한 유인과 제재를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음.
- 의무고용 부담 완화에 따라 법정 취업인원이 곧바로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고용비율은 낮추되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취업자 수의 총량을 늘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취업지원 대상자(취업 수요자)와 취업지원 실시기관(일자리 공급자)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의 개편 추진
 - 취업지원 대상자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일자리 공급자는 우수인력 채용과 기업지원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질의 일자리, 즉 취업지원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의무고용을 부과하되 해당 기업에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

- 셋째, 기관 특성별 의무고용률 차등의 명확한 근거 제시(수용성 있는 기준 제시)
 - 취업실시기관 수용성 제고와 정기적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기준(중소기업 범위 기준 등)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5년에 한 번씩 조정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넷째, 공공과 민간 구분 접근
 - 전반적으로 이행률이 높은 공공부문은 현행 유지의 큰 틀에서 미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낮은 민간부문은 의무고용률 재구조화(업종별, 기업규모별 고용비율 재설정 등) 추진
 - 고용이행률(의무고용 이행률)은 국가기관·지자체 63.2%, 공공기관·공기업 79.9%, 사립학교 35.0%, 일반기업 25.8%의 순으로 공공부문의 이행률과 민간부문의 이행률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의무고용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시급
 - 민간부문에서는 일반기업체와 사립학교 구분 접근
 - 사립학교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취업인원이 없는 학교(57%)와 있는 학교(43%)로 크게 분화되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평균 고용이행률이 약 70%에 달해 높은 수준임. 전자의 경우는 학교의 지역분포와 취업지원 대상자의 지역분포 비교 검토를 비롯하여 학교의 특성(학교급, 종사자 수 등)을 검토하여 고용비율 차등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종사자 수가 적은 학

교에 낮은 비율 적용)

□ 다섯째,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인 고용비율 접근

- 현재 고용이행률이 높은 공공부문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행 고용비율을 유지하되, 고용이행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민간부문에서 대기업과 같이 사회적 역할이 기대되는 집단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과 같은 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신, 고용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현행 비율을 하향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두 번째 원칙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유형화하여 전자에는 보다 높은 고용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대신 수용성을 고려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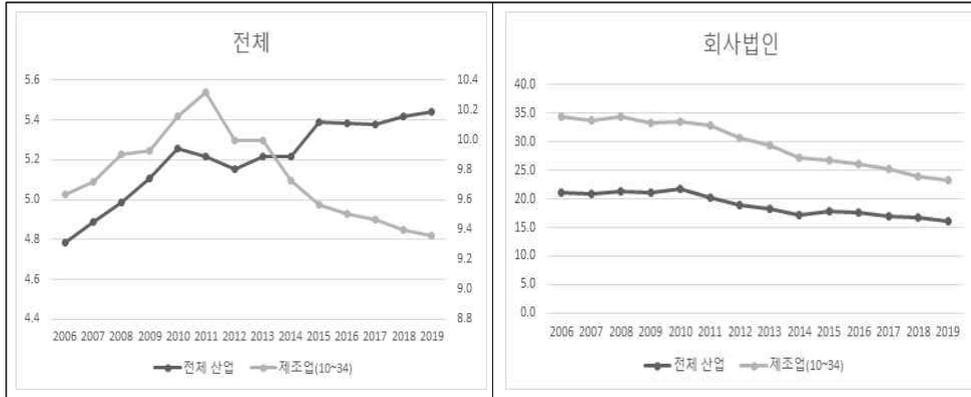
□ 여섯째, 전체적인 기업 당 종사자 수 변동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기준 조정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등록기준)」에서 파악된 연도별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 먼저, 전체 사업체의 경우 2006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2011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회사법인²⁾에 한정해서 살펴보더라도 제조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전체 산업 평균 종사자 수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제조업의 경우 200인 이상 사업장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하는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2) 동 조사는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외법인, 비법인단체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에서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적합한 회사법인만을 추출하여 평균 종사자 수의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음. 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이 해당됨.

[그림 3-1] 사업체 및 제조업체 평균 종사자 수 변화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kosis.kr에서 2022.12.22. 인출

2. 업종별 의무고용비율 재구조화

□ 민간부문 의무고용률 적용 기준(대안)

- 민간부문 의무고용률 차등을 위한 구분 기준은 ‘좋은 일자리’이면서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 더 많은 대상자를 취업시키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이어야 함. 이 같은 목적에 따라 구분 기준으로 종사자 수, 기업범위 기준, 매출액 기준, 기업성장률, 인증기준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업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로 창업(신생)기업이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경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등 국가로부터 인증된 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나 매 3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들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혜택을 취업지원 실시기관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 종사자 수는 과거 기업의 질적 특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되었지만, 최근 기술 중심 산업구조 재편 등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

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 수준에서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는 업종별 고용비율 할당을 비교적 단순명료하게 재편하는 방안과 매출액 기준 적용의 한계를 감안한 매출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기로 함.

가. 민간부문 1안 - 업종 재구조화

- 현재 시행령 상 업종은 79개(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별도 분류시 80개)이며, 업종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가 공존하고 있음. 그리고 동일한 대분류 업종에 속한 세 중·세분류 업종별로 상이한 고용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이에 2015년에 개정된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적용되는 44개 업종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2015년에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매출액의 단일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업종별로 매출액 한도를 달리 설정하였음. 여기서 분류되는 업종은 총 44개임.
- 아래 표는 기존 시행령 별표9의 79개(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업종 제외) 업종을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활용되는 44개 업종을 매칭한 결과임.
-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적용되는 업종(대, 중분류)에 해당하는 현재의 세부 업종의 의무고용비율이 동일한 업종은 다음과 같음.
 - 건설업의 2개 세부 업종(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2개 세부 업종(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2개 세부 업종(3%), 숙박 및 음식점업의 2개 세부 업종(4%)
-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적용되는 업종(대, 중분류)에 해당하는 현재의 세부 업종의 의무고용비율이 상이한 업종은 다음과 같음.
 - 광업에는 광업 지원 서비스업, 금속 광업 등 4개의 세부 업종이 포함되는데 3%, 4%, 5%로 고용비율이 상이함.

- 금융 및 보험업에는 5개의 세부 업종이 포함되는데 역시 5%와 7%로 상이하
게 적용되고 있음(취업지표가 양호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고용비율이
5%로 더 낮게 책정되어 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에는 농업, 임업, 어업의 3개의 세부 업종이 포함되어 있
으며, 역시 3%와 5%의 상이한 비율을 적용받고 있음.
 - 도매 및 소매업에도 3개의 세부 업종이 있는데 역시 3%와 5%의 상이한 비
율을 적용받고 있음.
 - 부동산업에도 3개의 세부 업종이 4%와 5%의 상이한 비율을 적용받고 있음.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의 3개 세부 업종이 3%
와 4%의 상이한 비율을 적용받고 있음.
 - 운수업 및 창고업의 5개 세부 업종이 3%, 4%, 5%의 상이한 비율을 적용받
고 있음.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4개 세부 업종이 3%와 5%의 상이한 비율을
적용받고 있음.
 - 정보통신업의 6개 세부 업종이 3%, 4%, 5%의 상이한 비율을 적용받고 있음.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3개 세부 업종이 3%와 5%의
상이한 비율을 적용받고 있음.
- 이와 같이 동일한 대(중)분류 업종 내에서 상이한 고용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업종의 경우 세부적 차등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평균 혹은 최저 비율
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아래 표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활용되는 44개 업종별 의무고용이행률과 (법
정)취업자 수를 기업규모별로 제시하였음.
- 앞서 상관분석에서 의무고용이행률은 민간부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기
업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
듯이 아래 표에서도 기업규모별로 뚜렷한 상관성을 찾기 어려움.
- 그러나 아래 표에서 열은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업종에서는 고용이행률

에서, 옅은 주황색 음영으로 표시된 업종에서는 취업자 수와의 비례관계가 각각 발견됨.

○ 이 같은 결과는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과 같이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따라서 새로운 의무고용비율 적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업종별 취업성과와 기업규모별 취업성과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가구내 고용활동 삭제,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추가

○ '가구내 고용활동'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말 그대로 가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통계청 분류기준에 따르면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 관리원, 가정교사 등을 고용한 가구의 활동"을 지칭함.

- 그런데 이와 같은 특성의 일자리를 국가가 보훈대상자에게 알선,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가구내 고용활동은 새로운 업종 분류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은 중소기업법에서 정의하는 44개 업종 중에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분류되어 있어 업종 재분류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37〉 현행 업종분류와 중소기업 범위기준 업종분류 비교와 기업규모별 고용이행률

연번 (79)	업종분류(보훈처 현행)	고용 비율	연번 (44)	업종분류(기업범위 기준)	고용이행률				평균 추	
					전체	중소	중견	대기 업	전체	중소
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			65.0	65.0	-	-	176	176
1	1차 금속 제조업	6	1	1차 금속 제조업	30.6	35.0	27.0	29.3	17.2	25.1
2	가구 제조업	3	2	가구 제조업	22.3	25.0	18.9	32.5	3.1	0.8
3	가구내 고용활동	3	-	(삭제)	0.0	0.0			0.0	0.0
	-	-	3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1.8	28.3	38.0		2.5	1.7
62	전문직별 공사업	5	5	건설업	7.8	5.7	9.8	27.6	2.6	1.9
65	종합 건설업	5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8	30.1	19.3	25.1	8.6	9.1
8	광업 지원 서비스업	3	7	광업	27.4	30.4	3.7	0.0	5.0	5.5
11	금속 광업	5								
29	비금속 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4								
3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3								
9	교육 서비스업	4	8	교육 서비스업	41.1	44.3	11.1	33.5	2.9	3.0
17	기타 제품 제조업	3	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18.3	6.7	37.6		0.9	0.1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3.0	34.4	31.2	33.6	3.2	2.6
1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7	11	금융 및 보험업	75.1	77.6	0.0	22.4	10.9	10.3
13	금융업	7								
26	보험 및 연금업	7								
34	생명 보험업	5								
38	손해 보험업	5								

106 보훈 의무고용제도 발전방안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5	15.8	16.6	19.9	4.8	4.3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4	13.3	38.9	79.3	34.0	14.0
19	농업	5	14	농업, 임업 및 어업	22.5	22.4	25.3	14.5	1.5	1.4
45	어업	3								
56	임업	3								
20	담배 제조업	7	15	담배 제조업	53.0	38.5	18.5	82.0	88.0	14.5
21	도매 및 상품중개업	4	16	도매 및 소매업	19.6	18.9	26.7	30.2	1.8	1.2
37	소매업(자동차 제외)	4								
57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								
2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3	1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0.6	12.5	17.5	25.3	1.5	0.3
25	보건업	4	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1	13.1	31.4		1.9	1.9
33	사회복지 서비스업	4								
27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4	19	부동산업	22.6	21.9	29.3	22.1	5.2	5.7
28	부동산업	5								
66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4								
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	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0.9	35.2	18.7	14.4	6.3	7.7
3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	2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2.0	22.0	26.5	26.0	2.7	2.4
32	사업지원 서비스업	3								
36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4	2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31.0	29.8	18.0	36.3	4.1	4.2
7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4	2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19.1	19.0	0.0	22.9	2.4	2.1
7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								
8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39	수도사업	8	24	수도업	13.3	20.0	5.8		0.7	1.0
42	숙박업	4	25	숙박 및 음식점업	8.7	8.3	13.5	18.5	1.2	0.4

50	음식점 및 주점업	4									
44	식료품 제조업	5	26	식료품 제조업	22.2	25.8	25.7	23.1	5.3	4.4	
43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5	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8	41.6	24.2	9.3	4.0	4.4	
68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									
22	도시철도 운송업	5	28	운수 및 창고업	11.0	9.9	3.5	27.4	3.1	2.8	
41	수상 운송업	4									
4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									
67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69	철도운송업	5									
77	항공 운송업	5									
49	음료 제조업	5	29	음료 제조업	8.6	12.5	18.2	11.0	8.6	10.0	
5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3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7.9	13.1	17.5	49.6	2.9	1.7	
5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	3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4.1	9.0	41.8	17.7	4.9	1.3	
5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3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1.4	14.8	10.7	19.0	3.2	2.1	
5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3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0.6	40.2	66.6	43.5	3.5	4.2	
55	임대업(부동산 제외)	4	34	임대업(부동산 제외)	14.7	1.6	20.7	6.7	0.8	0.2	
5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1	33.9	54.5	43.5	17.1	21.8	
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	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8.8	45.8	5.6	46.9	61.1	139.1	
60	전기장비 제조업	6	37	전기장비 제조업	15.3	17.8	26.1	26.4	6.4	6.9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3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2	29.3	15.5	33.5	4.6	4.4	
1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46	연구개발업	5									

108 보훈 의무고용제도 발전방안

61	전문서비스업	3									
6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3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5	15.1	30.1	28.0	13.3	8.5	
24	방송업	3	40	정보통신업	21.8	18.8	36.0	25.5	5.2	2.3	
47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									
64	정보서비스업	4									
70	출판업	3									
7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									
73	통신업	5									
7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4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4.4	68.4	48.2	45.7	37.1	54.7	
7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4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2.9	56.1	9.3	33.6	6.1	5.6	
14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4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2	29.4	19.6	41.0	2.3	2.1	
40	수리업	5									
78	협회 및 단체	5									
7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6	4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1.1	37.1			8.8	9.0	
계					25.8	26.3	20.8	28.1	4.9	4.3	

-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7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22년 9월 11일 인출.
- 2)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 부표 1과 부표 3, 대통령령 제31758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8%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에서 2022년 9월 11일 인출.
- 3)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

나. 민간부문 2안 - 5대 업종(또는 7대 업종)으로 분류

- 매출액을 대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적용되는 5대 업종 또는 7대 업종을 검토
 - 업종별, 매출액 수준별 분류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제조업은 총 24개 업종(중분류)으로 구분되고, 비제조업은 총 20개 업종(대분류)으로 구분됨.
 - 중소기업 범위기준에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범위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 등의 매출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의 업종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범위를 적용받는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의 6개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이들을 매출 상위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2-1안).
 - 한편, 매출액 1,0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업종은 총 18개이나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또한 아래 <표 3-38>에서 보듯이 같은 규모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취업관련 지표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들을 세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2-2안).

〈표 3-38〉 기업범위 기준: 평균 매출액과 주된 업종

소기업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중견기업	대기업
각 업종별(중, 세분류별) 별도 기준	1,500억원 이하	제조업(6개업종)	1,500억원 초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법인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
	1,000억원 이하	제조업(12개 업종)	1,000억원 초과	
		비제조업(6개 업종)		
	800억원 이하	제조업(6개 업종)	800억원 초과	
		비제조업(3개 업종)		
	600억원 이하	비제조업(6개 업종)	6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비제조업(5개 업종)	400억원 초과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 부표 1과 부표 3, 대통령령 제31758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에서 2022년 9월 11일 인출.
 2)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5%EC%A0%90%EA%B7%9C%EC%A0%9C%EB%B0%8F%EA%B3%B5%EC%A0%95%EA%B1%B0%EB%9E%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서 2022년 9월 11일 인출.

□ 위와 같이 5대 업종 또는 7대 업종으로 분류할 경우 업종별로 적정한 수준의 고용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로 취업자 수와 고용이행률을 검토함(아래 표).

○ 5대 업종으로 먼저 보면, 취업자 수가 많은 업종은 제조업 6개(1,500억원 이하), 비제조업 5개(400억원 이하)의 순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범위기준에서 명시적인 매출액이나 암묵적인 사업장 규모와 비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7대 업종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결과임.

○ 5대 업종으로 고용이행률을 살펴보면 비제조업 5개(400억원 이하)를 제외하면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평균 고용이행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고, 상위 분류로 갈수록 평균과 중위의 편차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음(평균 값과 중위 값이 가까울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짐). 그렇다 하더라도 취업자 수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순위와 일치하지 않음. 7개 업종으로 분류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표 3-39〉 5대, 7대 업종별 특성

단위: 개소, %

구분	취업자 수		고용이행률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제조업 6개(1,500억원 이하) ①	9.4	2.0	28.4	20.0	
제조업 12개, 비제조업 6개(1,000억원 이하) ②	5.1	0.0	18.7	0.0	
	제조업 12개 ②-1	10.5	2.0	26.9	16.0
	비제조업 6개 ②-2	3.0	0.0	15.5	0.0
제조업 6개, 비제조업 3개(800억원 이하) ③	1.8	0.0	12.6	0.0	
	제조업 6개 ③-1	4.0	1.0	21.1	11.0
	비제조업 3개 ③-2	1.6	0.0	12.1	0.0
비제조업 6개(600억원 이하) ④	1.2	0.0	11.1	0.0	
비제조업 5개(400억원 이하) ⑤	7.3	0.0	38.9	0.0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 부표 1과 부표 3, 대통령령 제31758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에서 2022년 9월 11일 인출.
 2)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

□ 이상과 같은 논리적 불합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취업성과의 순으로 높은 의무고용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5개 업종으로 할 경우 ①~⑤의 순으로, 7개 업종으로 할 경우에는 ①, ②-1, ③-1, ②-2, ③-2, ④, ⑤의 순으로 높은 고용비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 ④와 ⑤의 순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다. 민간부문 3안 - 기업규모(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로 분류

□ 매출액을 대체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으로 기업규모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따라서 의무고용비율 적용 기준을 기업규모의 단일 기준으로 할 경우 논리적인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기업의 규모를 볼 때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에 높은 고용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나,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반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 논리적 문제에 봉착
- 따라서 기업규모는 다른 기준의 보조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0〉 기업규모별, 비제조업-제조업별 평균 고용이행률

단위: 개소, %

구분	비제조업		제조업	
	기업수	평균 고용이행률	기업수	평균 고용이행률
중소기업 외	11,643	26.3	977	25.9
중견기업	920	20.5	678	21.3
대기업	617	26.6	198	32.6
전체	13,180	25.9	1,853	24.9

자료: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중소기업 범위기준 사례

○ 과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에서 2015년 1월부터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변경

- 〈부표 2〉에서 보듯이 실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는 크게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고, 규모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과 업종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되는 자산총액(5천억원)으로 다시 구분

- 개편 이전 종사자 수 상한선 기업 중 매출액(자산)이 가장 큰 금액을 금융상한선으로 설정함에 따라 개정된 범위 기준에서도 매출액과 더불어 종사자 수가 고려된 것으로 해석(노동집약형 업종과 자본집약형 업종)

-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변경이 불가능한 매출액 지표가 보다 적절
- 주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이 대분류 기준. 단, 제조업은 중분류로 구분. 상한 기준은 업종에 관계 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그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
-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시행령 3조의3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에 따라 5년마다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기준은 <표 3-38> 참조
 - 대기업(대규모기업집단)은 2022년 5월 기준 76개 기업. 이들 기업의 계열회사(총 2,886개 기업)도 모두 대기업에 해당. 매년 5월 지정

라. 민간부문 4안 - 1안+3안

- 기업범위 기준에 적용되는 44개 업종별로 기업규모별로 의무고용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이 안은 1안과 3안을 결합한 안임. 2안과 3안의 경우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세부 업종별 고용 여력이나 수용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1안의 경우는 단순히 업종을 45개로 축소한 나머지 기업규모별로 실제하는 고용 여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위 <표 3-37>에서 제시된 44개 업종별, 기업규모별 고용이행률을 참고하여 의무고용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이 될 것임.
- 이와 같이 적용할 경우 대기업을 기준으로 해당 업종의 가중평균, 산술평균, 최저 고용비율을 적용하고(평균은 소숫점 이하 절삭),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하계 3~8%로 유지되면서, 중견기업은 2~7%, 중소기업은 1~6%씩 적용됨.

〈표 3-41〉 44개 업종별 조정 의무고용비율 예시

연번 (44)	업종분류(기업범위 기준)	현행 고용비율	대기업 기준		
			가중평균	산술평균	최저
1	1차 금속 제조업	6	6	6	6
2	가구 제조업	3	3	3	3
3	산업용 기계장비수리업	-	-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3	3	3
5	건설업	5	5	5	5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5	5	5
7	광업	3, 4, 5	3	4	3
8	교육 서비스업	4	4	4	4
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	3	3	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	3	3	3
11	금융 및 보험업	5, 7	7	6	5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5	5	5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4	4	4
14	농업, 임업 및 어업	3, 5	4	4	3
15	담배 제조업	7	7	7	7
16	도매 및 소매업	4, 5	4	4	4
1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3	3	3	3
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	4	4	4
19	부동산업	4, 5	4	4	4
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	7	7	7
2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	3	3	3
2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4	4	4	4
2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3, 4	4	3	3
24	수도업	8	8	8	8
25	숙박 및 음식점업	4	4	4	4
26	식료품 제조업	5	5	5	5
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5	4	4	3
28	운수 및 창고업	3, 4, 5	3	4	3
29	음료 제조업	5	5	5	5
3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3	3	3
3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	6	6	6
3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3	3	3
3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3	3	3
34	임대업(부동산 제외)	4	4	4	4
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4	4	4
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	8	8	8

4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5	4	4	3
4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6	6	6	6

주: 3번 '산업용 기계장비수리업'은 현행 업종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현행 고용비율과 대기업 기준 고용비율을 기재하지 않음.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 부표 1과 부표 3, 대통령령 제31758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에서 2022년 9월 11일 인출.
2)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

마. 기타 고려할 사항

□ 기업규모별 분류 상 검토할 점

○ 12,620개소의 중소기업 외에는 실제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내 고용활동' 업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 중 협회 및 단체도 포함되어 있음. 이들에 대해서는 여타 중소기업과 다른 의무고용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의무고용비율 3%가 적용되고 있는 '가구내 고용활동' 업종의 경우 현재 1개 기업((주)현대주택관리, 종사자 수 333명)이 있지만, 현재 고용실적이 없는 상태임. 가구내 고용활동은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조, 유모, 개인 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 관리원, 가정교사 등을 고용한 가구의 활동'을 의미함. 따라서 이들 업종에 의무고용 부과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좋은 일자리 취업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업종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제외 검토
- 의무고용비율 5%(공공은 6%)가 적용되고 있는 협회 및 단체는 현재 200개소(공공 82개소, 민간 118개소)가 있으며, 평균 고용이행률은 49.3%(공공 64.4%, 민간 38.9%)로 전체 업종 평균 고용이행률을 상회함. 따라서 여타 중소기업보다 높은 고용비율 적용 필요

□ 시행령 별표와 실제 취업지원 실시기관 불일치(부동산 관련 업종)

- 의무고용비율은 부동산업이 5%,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4%이고,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은 4%로 되어 있음.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세분류로써 이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업(131개소)의 의무고용비율이 5%이지만 종사자 규모는 평균 34명, 고용률은 30.4%인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2개소)의 종사자 규모 평균 116명, 고용률 25.5%, 주거용 부동산관리업(167개소)은 각각 15명과 16.0%임. 종사자 규모나 사업장 수를 비교할 때 부동산업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나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에 비해 의무고용비율을 높게 책정할 근거는 희박
 - 따라서 이들 업종을 하나의 업종, 즉 부동산업으로 통합하고 현행 부동산업에 적용하는 5%보다는 하향 조정 필요

3. 공공부문 개선방안

- 국가기관, 공립학교, 지자체(교육청 포함)를 제외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체는 현행 비율 유지하되,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
- 기타국가기관과 같이 의무고용 이행이 적용되는 직렬의 종사자 수가 적어 의무고용이행률(9.6%)이 현저히 낮은 기관 유형에 대해서는 고용비율을 정하기보다 1명 이상 채용과 같은 정원 설정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그마저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
- 민간인 취업수요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군부대의 경우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제외 필요(종사자 수가 0인 국방부 소속 군부대 26개소)
 - 단, 사관학교를 비롯한 포병학교 등 각종 학교의 경우는 실제 종사자 수 파악 후 적용 가능성을 별도 검토할 수 있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의무고용 실효성 제고 방안

제1절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2절 의무고용 강제 방안

제 4 장 의무고용 실효성 제고 방안

제1절 인센티브 부여 방안

1. 사례검토

- 기업의 의무고용을 실효성 있게 제고하는 방안으로 먼저 기업의 보훈대상자 고용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의무고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순응성 확보수단으로 제재수단의 강화 보다는 경제 및 사회 환경 반영과 기업의 보훈대상자 채용 확대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한국정책학회, 2019, p.34).
- 그중 상이가 있는 제대군인을 채용한 기업(체)에게 더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서 장애인 채용 또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혁신을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함.

가. 미국

- 제대군인 고용 기업 지원
 -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제대 군인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흔치 않음(한국경제, 2012.3.8.).
 -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에 제대군인 및 상이군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로 하였음(강문경, 2013, pp.70-71).

○ 기존에 제대군인 고용주에게 적용되던 세금감면(Tax Credit)은 2010년 종료되어,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원에서 제대군인 고용과 훈련을 실시하는 고용주에게 “The VOW to Hire Heroes Act of 2011”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함(The white house, 2022).

- (The Returning Heroes Tax Credit) 단기 실업자 제대군인과 장기 실업자 제대군인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세금을 아래와 같이 감면.
 - (단기 실업자) 최소 4주 이상 실직한 제대 군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위해 첫 임금 \$6,000의 40%에 대해 공제(따라서 최대 \$2,400까지 공제).
 - (장기 실업자) 6개월 이상 실직한 제대 군인을 고용한 고용주를 위해 첫 임금 \$14,000의 40%에 대해 공제(따라서 최대 \$5,600까지 공제).
- (The Wounded Warrior Tax Credit) 후유장애가 있는 제대군인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아래와 같이 세금을 감면.
 - 관련 후유장애가 있는 제대 군인에 대한 기존의 근로기회세금감면(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를 유지(최대 \$4,800).
 - 후유장애가 있는 장기 실업 제대군인에 대한 기존 세금 공제를 두 배로 늘려, 6개월 이상 실직한 후유장애 제대 군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첫 임금의 \$24,000의 40%에 대해 공제(최대 \$9,600).
 - 특정 면세 조직의 경우 제대군인 고용에 따른 근로기회세금감면(WOTC)과 고용주의 사회보장세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음(Military.com, 2022).
- 이러한 고용주에 대한 세금감면은 연방정부의 근로기회세금감면(WOTC) 차원에서 고용주에게 적용됨.

○ 근로기회세금감면(WOTC)

- WOTC Credit 은 고용이후 실제 근무 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각 주에서 지정한 WOTC Coordinator에 접수 시킴.
 - 접수된 서류는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Approval Certification을 신청한 고용주들에게 발행하게되면, 고용주들은 여기에 산출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세액공제액만큼을 고용주의 연방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급여가 지급됨(한국일보 LA, 2018.2.15.).
 - 미국 노동부는 이러한 세금 감면을 받는 쉽기 하기 위해 단계별 툴 키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또는 외상성 뇌 손상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퇴역 군인을 모집하는 전략, 그들을 수용하는 최선의 방법, 그들을 유지하는 방법 및 그들을 고용함을 통해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는 방법 등 포함됨 (Debt.org, 2022.12.30.).
- 근로기회세금감면(WOTC) 대상 집단 및 제공 방법(IRS, 2020)
- 특정 집단 대상자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사업주들에 대해 해당 대상을 고용할 경우 \$2,400~\$9,600달러 상당의 WOTC Credit 제공(세액공제 형태의 세금감면 제공)하는데, 여기서 특정 그룹 대상자에 해당하는 제대군은 다음과 같음.

- 고용 날짜에 끝나는 3개월 기간 중 최소 15개월 동안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푸드 스탬프)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족 구성원
- 총 4주(연속 여부에 관계없이) 이상 6개월 미만 고용 날짜에 종료되는 1년 기간 동안 실업자
- 고용일로부터 끝나는 1년 기간 중 최소 6개월(연속 여부에 관계없이)의 기간 동안 실업자
-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미군에서 제대 또는 현역에서 제대한 후 1년 이내에 고용된 경우
- 또는 고용이 종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1년 기간 동안 총 6개월(연속 여부에 관계없이) 동안 후유장애 및 실업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이있는 경우

□ 특별 고용주 인센티브(Special Employer Incentive, SEI)

- SEI 프로그램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함.
- SEI 프로그램에 참여를 승인받은 고용주가 제대군인을 고용하면, 제대군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데, 고용주는 SEI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제대군인 급여의 최대 50%를, 최장 6개월간 환급받을 수 있음(김성우 2018, p. 65).

나. 한국

- 관련 사례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등을 들 수 있음.

□ 한국의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국가보훈처 보도자료, 2022.6.10.)

- 추진배경 : 제대군인 고용 및 인재육성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확대
- 인증주체 : 국가보훈처장
- 인증대상 :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업종 및 규모의 제한은 없으나, 임금체불·세금체납·산재발생 등의 기업은 제외
- 인증 충족 조건[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 유지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 기업등의 경영자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채용 및 육성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인정될 것
 - 기업등의 경영 상태가 건전할 것
- 유효기간 : 3년(인증기간 만료업체는 재심의를 통한 인증서 갱신)
 - 다만,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인증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발생 시 즉각 회수
- 고용우수기업 혜택
 - 2022년의 경우 인증패 수여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1년 유예를 비롯해 농협·신한·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여신지원 때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신설됨.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혜택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외국인 채용을 위한 사증체류우대(신설)
- (관세청)관세조사 1년 유예(신설)
- (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추가 제공 등 무역보험 특별지원, 국외기업 신용조사 5회 무료제공(신설)
- 시중은행(농협·신한·SC제일) 여신지원 시 금리우대(신설)
- 위탁병원 지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타 인증지원사업·포상 심사 시 우대
- 신규 채용 시 우수인재 Pool 제공 등

○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2022.12.28.)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복지제도

- 지원요건 :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원금 지급대상 제대군인

-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자로서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취업 희망풀(Pool)」에 등재된 사람

할 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 : 연간 360만원 / 6월 마다 180만원 지급(3개월 마다 분할 지원 가능)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
 -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참조)을 고용한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 고용장려금(복지로, 2022.12.30.)

○ 장애인근로자의 취업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월별로 민간부문의 경우 3.1%, 공공부문의 경우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제외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80만원 지급
- 2020년 발생분부터의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가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처리절차 전반에 걸쳐 걸쳐 사업을 주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 메인비즈, 이노비즈 인증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과는 그 목적이 다르지만, 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들의 경우 유사한 영역과 방법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정기준과 인증 기업 혜택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노비즈(INNOBIZ)

○ OECD가 1992년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평가 모델인 '오슬로 매뉴얼 (Oslo manual)'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제도(한경 경제용어사전, 2022.12.30.)

○ 이노비즈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이노비즈, 2022.12.30.)

- 중소기업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중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INNOBIZ'로 지칭하며, 그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기업을 등록하면, 자가 진단을 실시하며, 65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이후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를 받고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면서 기술평가 등급이 B 이상인 경우 '이노비즈'로 인증됨.

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자가진단(예비평가) 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4등급제 중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1)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지원혜택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주관	
금융/세제	대도시(수도권) 법인 중과세의 예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취득세 중과 면제 *수도권 취득세 중과 제도	지방세법시행령제26조1항34호/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 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스타트업의 기업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 유예기간은 정기 세무조사 4년 + 수도권 2년, 지방 3년으로 최대 7년 유예 가능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방침/국세청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평가보증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협약은행 : 기업, 산업, 농협, 우리, 외환, 하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경남, 부산, 전북은행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우대지원	· 이노비즈 기업 보증한도 50억원(일반기업의 경우 30억원)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원 확대(신용등급별 차등적용·보증요율 우대)	서울보증보험
	매출채권보험	·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신용보증기금
	코스닥 상장 지원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기준 하향 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금융위원회
	무역보증 지원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무역보험공사
	신시장진출지원금	· 우수기술의 제품화, 산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분야(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	병역특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 부여	산업기능요원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이주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품목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사전 기획을 지원받아 도출된 우수 과제를 선정·지원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자격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생산현장 디지털 사업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인증기업 가점 2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수출	물품구매 적격심사	· 이노비즈 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심사 혁신형기업 가점 2점,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가점 2.5점 부여	조달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 지원 *이노비즈 기업 가점 4점 부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광고비(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이노비즈 기업 신청자격 대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료: <https://iso-certification.kr/이노비즈/>에서 '22.12.29 인출

□ 메인비즈(MAINBiz)

- 메인비즈 제도는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지원하는 제도임(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 2022.12.30.).
- 메인비즈(MAINBiz)란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로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
 - 도입 목적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는데 있음
 - 대상 :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함(단,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제외)
 - 근거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3항

- 이후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현장평가 700점 이상시 '메인비즈'로 인증됨

○ 메인비즈 선정기준

- 온라인 자가진단

- 온라인 자가진단(1000점)은 경영혁신 인프라 350점, 경영혁신활동 400점, 경영혁신성과 250점으로 구성되며. 합계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 메인비즈 선정 평가(현장평가)*를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현장평가 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선택

- 현장평가

- 평가내용은 현장 평가 전 단계인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기업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 실사를 통해 평가함(온라인 자가진단에 체크한 항목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심사를 실시)
- 현장평가 심사 점수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이 각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인승승인을 요청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최종인증 승인시, 메인비즈 인증 획득

○ 메인비즈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2〉 경영혁신중소기업(MAINBiz) 지원혜택

구 분		주요지원내용	근거/주관
금융/세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 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스타트업의 기업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 유예기간은 정기 세무조사 4년 + 수도권 2년, 지방 3년으로 최대 7년 유예 가능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방침/국세청
	금리우대	· 한국은행 :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혁신기업에 포함) · NH농협 : 대출금리 최대 1.65% 할인 · 신한금융투자 : 기업공개 및 코넥스상장 컨설팅, 자금조달 컨설팅 등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농협 신한금융투자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 메인비즈 기업 대출한도	

130 보훈 의무고용제도 발전방안

	무역보증 지원	· 무역보증보험료 기본요율의 20% 할인 · 한도책정 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
인력	병역특례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 부여	산업기능요원제도
	일학습병행제	· 혁신형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인적요건 완화	한국산업인력공단
R&D	도시주택 기술·제품개발 사업	· 도시주택건설관련 기술 또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메인비즈 인증 기업 가점 1점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생산현장 디지털 사업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인증 기업) 가점 2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판로/ 수출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 입찰 추정가격 10억 이상인 경우 : 적격심사 신인도 심사 혁신형기업 가점 2점,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가점 2.5점 부여 · 입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경우 : 가점 2점 부여	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신청기준 완화 *메인비즈 기업의 경우 직접 수출액 100만불 이상이면 신청 가능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광고비(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료: <https://iso-certification.kr/메인비즈/>에서 '22.12.30 인출

다. 합의 및 검토 방향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중과세 예외, 정기 세무조사 유예, 각종 보증지원 및 금융지원, 인력 지원, 채용 보상, 공공조달 입찰, R&D 지원, 병역특례업체 지정 우선순위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중 세금 감면 혜택은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으로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은 고용주의 세금혜택에 있어 제대군인과 상이가 있는 제대군인을 구분하여, 상이가 있는 제대군인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더운 높은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서도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를 채용한 기업체에 대한 감세를 적용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제대군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감세비율보다는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것임.
 - 한국에서도 고용촉진장려금에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 포함되지만 여기에는 상이 유무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
- 한국정책학회(2019)는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체 인센티브 방향과 관련하여 인사 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한국정책학회, 2019).
 - 의무고용비율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법인세 등 감면 혜택”(26.7%), “회사에 보훈취업 장려금 지급”(25.0%), “고용비율 우수 기업체에 대한 정부 포상”(18.1%, 21명), “기업체의 인력선택권 확대(고용예정인원 5배수 추천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래 결과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기업 측면에서도 법인세 등의 감면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음.

고를 독려할 수 있고 기업차원에서는 이미지 제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무고용 비율 우수 기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포상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3〉 의무고용비율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 인식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응답비율
고용비율 우수 기업체에 대한 정부 포상	18.1
기업체의 인력선택권 확대	17.2
각종 관급공사 혜택 부여	6.9
회사에 보훈취업 장려금 지급	25.0
법인세 등 감면 혜택	26.7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인사, 노무, 재무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	6.0

자료: 한국정책학회(2019).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제도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p. 74.

- 메인비즈와 이노비즈 각 인증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업에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볼 수 있음. 또한 이들 인증과 보훈 의무고용과의 연계를 통해 의무고용 이행률의 실질적인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인증 요건(선정기준)에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 지표를 삽입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검토해볼 수 있음.
- 하지만 보훈 의무고용과 해당 인증 제도의 주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 인증의 주요 배점 항목이 아닌, 앞서 살펴본 인증에 적용되고 있는 가점(1~4점)과 같은 형식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제2절 의무고용 강제 방안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함.

- 부담금은 용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2021. 7. 20.>

○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방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②에 따르면,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 동법 제33조 ③에 따르면,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1)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부담금 납부 금액

-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

〈표 4-4〉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기준(적용)연도		2021년	2022년
신고연도		2022년	2023년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10%	3.10%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3.40%	3.60%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장		

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교육청)은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 부칙(제14500호, 제18308호)에 근거, 공무원 부문 적용년도 2020년~2022년 부담금 총액의 1/2 감액, 적용년도 2022년~2024년 의무고용률 상승에 따른 추가 발생금액의 1/2 감액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부담금 기초액

- 부담기초액의 정의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표 4-5〉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 (2022년 적용·2023년 신고)	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149,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1,217,94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1,378,8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1,608,6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1,914,44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자료: 국가법령센터(20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한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도 있는데, 이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임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제도(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12.20.)

- (목적)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
-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9조
 -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 공표 절차 : 공표 대상 사전 예고, 이행지도, 최종대상 확정 순서로 이뤄짐
 - 사전 예고: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조사가 1월에 이뤄지고 이를 통해 의무 고

경우, 근로자의 경우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만(의무고용률의 80%)인 경우

- 공공기관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인 경우
- 민간기업은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5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인 경우
- 이행지도 : 사전 예고 후 6개월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설명회·간담회,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토록 조치
- 최종공표 : 이행지도 기간 동안 공표 기준 이상 장애인고용 등 제외기준 충족 기관을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공표 대상 확정

〈표 4-6〉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공표 현황

구분	'21년 공표	'22년 공표	비고
최종공표	515개소	436개소	79개소 감소
국가·자치단체	2개소	0개소	2개소 감소
공공기관	28개소	17개소	11개소 감소
300~499인	229개소	215개소	14개소 감소
500~999인	172개소	146개소	26개소 감소
1,000인 이상	84개소	58개소	26개소 감소
대기업집단	26개소	23개소	3개소 감소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12.20.).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36개소 명단공표.

○ 공표제외 기준

- 기본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이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 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해소계획 제출 등

- 추가 이수 요건

업장 등과 연계 고용 실시, 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맞춤훈련 실시 등

나. 합의 및 검토 방향

□ 의무고용 강제 방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상기 기업 면담결과에서도 제기된 것과 같이 강제금 부담이 의무고용에 비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면죄부'로 기능 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포상과 마찬가지로 명단공표는 정부차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기업의 의무고용율 제고를 독려할 수 있고 기업은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러한 강제방안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시키는 인센티브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강제 방안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인센티브 방안과 병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정책함의 및 제언

제 5 장 정책함의 및 제언

1. 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실화

□ 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취업지원 수요 파악

○ 보훈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고용보조지표 등 거시적인 통계 정기적 집계.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같이 정기적인 집계가 필요함

- 다만, 조사 주기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사례와 같이 매년 실시하는 방안과 격년 또는 법령에 근거한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3년 주기를 검토해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실태조사는 표본규모는 3천 명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음. 이에 따라 조사문항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향후 조사는 대면조사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음.

○ 전술한 것과 같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주기의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 주요 고용지표와 취업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2. 취업지원 대상자와 기업 인력 수요 합치

□ 기업간담회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기업에서 필요한 인적자본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인력의 문제는 의무고용 실효성의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

□ 현행 취업지원 대상자 교육훈련 내실화

- 양질의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선별함으로써 교육 훈련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삼성전자의 SSAFY(청년 SW 아카데미), SK그룹의 청년 Hy-Five(인턴십), 현대자동차의 H-Experience (인턴십), LG의 LG소셜캠퍼스(사회적기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기업과 협약 추진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취업지원 서비스

- 등록된 취업지원 실시기관과 취업지원 대상자의 지역 분포를 고려한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취업확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취업지원 대상자 거주지역 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지원 실시기관 등록 노력

3. 취업지원 실시기관 및 재직자 실태 모니터링

□ 보훈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의 원칙에 따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질 관리 필요

-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제외 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등을 참조하여 다음의 기업은 적용 배제
 -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은 제외(가구내 고용활동이 여기에 해당)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서 정하는 업종)

□ 기 취업자의 고용환경 모니터링

- 양질의 기업에 종사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경우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기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고용되어 있는 보호대상자의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
 - 가점취업 혹은 보호특별채용 등으로 인한 낙인(stigma)과 그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지 등 점검

4.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취업지원 대상자의 인적자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일차적으로 연령대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 예컨대 청년의 경우 교육훈련에서 전술한 것과 같이 주요 대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노인의 경우 현재 교육훈련 제공 대상연령을 상향한 것과 더불어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선별 및 알선. 노인 대상 교육훈련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통한 고령 취업지원 대상자 지원도 검토 가능
- 상이여부에 따른 맞춤형 접근
 - 상이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업의 별도의 수요를 파악하여 적합한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고용서비스 특화 검토 필요
 - 이 경우 상이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이행률에 가산. 현행 법 상

5. 의무고용 이행률 산정의 합리화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의무고용 이행률 산정

-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연구기관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행정 또는 전문직만 법정인원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연구직의 경우 통상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로 가점취업이나 보훈특별고용에 의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범주에 한정하여 이행률 산정할 필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12.20.).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36개소 명단공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9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58호.
- 국가보훈처. (2022). 국가보훈처 내부자료.
- 국가보훈처. (2022).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자료.
-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2022.6.10.). 2022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2022). <https://www.vnet.go.kr/gud/GudCv007.do>
- 국가보훈처 취업지원정보시스템. <https://job.mpva.go.kr/portal/popup200023.html>
- 국가보훈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 기업집단포털. (2022.11.18.). <https://www.egroup.go.kr/egps/wi/stat/kap/appnSttusList.do>
- 김성우. (2018). 생애주기별 보훈대상자 지원정책 연구. 국가보훈처.
- 메인비즈. (2022.12.30.). <https://iso-certification.kr/메인비즈/>
- 복지로. (2022.12.30.).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 이노비즈. (2022.12.29.). <https://iso-certification.kr/이노비즈/>
- 이노비즈. (2022.12.30.). <https://www.innobiz.net/intro/intro1.asp>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전문용어. (2022.12.3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8974&cid=50304&categoryId=50304>
- 통계청. (2022). 2022년 9월 고용동향.
- 통계청.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한경 경제8연간전. (2022.12.3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02>

한국일보. (2018.2.15.). Work Opportunity Tax Credit. <http://m.koreatimes.com/article/20180214/11586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보훈처. (2022). 2022년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2022).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7_01.jsp

한국정책학회. (2019).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제도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Debt.org. (2022.12.30.). <https://www.debt.org/veterans/business-incentives-hiring/>

Internal Revenue Service. (2020).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ork-opportunity-tax-credit#targeted>

Military.com. (2022). <https://www.military.com/hiring-veterans/resources/tax-credits-for-hiring-veterans.html>

The White House. (2022).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1/11/21/fact-sheet-returning-heroes-and-wounded-warrior-tax-credits>



[부록 1]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표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주요 고용지표를 산출하고 의무고용 추가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료는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오니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문길 연구위원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행 : 한국능률협회플러스 유진호 센터장, 남정민 책임연구원(02-3279-2309)
 ▶ 담당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연구위원, 남운재 연구원(044-287-8191)

※ 본 조사에서 모든 설문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응답자의 경우 회신내용 확인을 위한 연락 시 필요한 사항이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응답자주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구주소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신주소	동 호 (동, 아파트)

※ 면접원이름	※ 면접원ID	※ 검토자1	※ 검토자2	조사일시

SQ1. 대상 구분

- __① 독립유공자 __② 전문순직군경 __③ 전상공상군경 __④ 무공보국수훈 __⑤ 제대군인
 __⑥ 고엽제외증 __⑦ 보훈보상대상

SQ1-1. 대상 구분 세부

- __① 본인 __② 배우자 __③ 자녀

A. 가구 일반 사항

A1. 현재 귀댁의 가구원(가구주 포함) 수는 몇 명입니까?

	명
--	---

※ 가구주: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
 ※ 가구원: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가구를 형성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구성원
 1. 따로 살고 있지만 생계를 해당가구에 의존하거나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주말부부, 학생 등)은 포함
 2. 본가할 자녀, 군인 등 입대할 가족, 함께 살고 있는 가사사용인·운전자·하숙생 등의 동거인 등은 제외

가구주 여부	성별	교육 수준	
		과정	상태
1. 가구주 2. 가구주 아님	1. 남 2. 여	0. 안받음(미취학 포함)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4년제 미만) 5. 대학교(4년제 이상) 6. 대학원 이상	1. 졸업 2. 재학(휴학 포함) 3. 중퇴(수료 포함) ※ '0. 안받음'은 수락 여부를 기입하지 않음

B. 일에 관한 사항

※ '지난 주'는 '일요일~토요일'의 지난 1주를 의미합니다.

B1.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__① 예 ⇨ B4로 이동
- __② 아니오

B2. 지난 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__① 예 ⇨ B4로 이동
- __② 아니오

B3. 지난 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__① 있었음 ⇨ B3-1로 이동
- __② 없었음 ⇨ C1로 이동

B3-1.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① 일시적 병, 사고
 - __② 휴가 · 연가
 - __③ 교육 · 훈련
 - __④ 육아
 - __⑤ 가족적 이유
 - __⑥ 노사분규
 - __⑦ 사업부진 · 조업중단
 - __⑧ 기타: _____ ⇨ C1로 이동
- | | |
|--|----------|
| | ⇨ B5로 이동 |
|--|----------|

※ '주된 일(주업)'은 수입을 목적으로 주로 하는 일로서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시간이 가장 많은 일을 의미합니다.
 - '다른 일(부업)'은 주된 일 이외에 따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B4. 지난주에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__① 있었음
- __② 없었음

B5. 지난주에 실제 몇시간 일하였습니까?

※ 총 시간은 '주된 일(주업)'과 '다른 일(부업)'의 합계임

B5-1. 주된 일: 시간

B5-2. 다른 일: 시간

B5-3. 총계: 시간

- ┌ ① 무급가족종사자 중 1~17시간 C1로 이동
- | ② 총계 0 ~ 35시간 B6로 이동
- └ ③ 총계 36시간 이상 B8로 이동

B6.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였습니까?

- __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 __②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B7로 이동
- __③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음
- __④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B8로 이동

B7.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 __① 있었음
- __② 없었음

※ 아래 B8 ~ B13번 문항은 지난주의 '주된 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B8. 지난주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사업체(직장)명: _____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_____

B9. 지난주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 __① 1 ~ 4명
- __② 5 ~ 9명
- __③ 10 ~ 19명
- __④ 20 ~ 49명
- __⑤ 50 ~ 199명
- __⑥ 200 ~ 499명
- __⑦ 500명 이상

C. 구직에 관한 사항

C1.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 __① 구해 보았음
- __② 구해 보지 않았음 ▶▶ D1로 이동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함

C2. 지난 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 __① 있었음
- __② 없었음 ▶▶ D5로 이동

C3. 주로 어떤 방법과 경로로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C3-1. 구직방법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 __① 보훈처/보훈지청 안내, 알선
- __② 시험 접수, 시험 응시
- __③ 구직 등록, 구직 응모
- __④ 사업체에 문의, 방문, 원서제출
- __⑤ 자영업 준비
- __⑥ 친척, 친구, 동료에게 소개 부탁
- __⑦ 기타: _____

C3-2. 주로 어떤 경로로 직장(일)을 알아보았습니까?

- __① 보훈처/보훈지청 안내, 알선
- __②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
- __③ 민간 취업알선기관
- __④ 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등)
- __⑤ 학교, 학원
- __⑥ 친척, 친구, 동료
- __⑦ 기타: _____

C4. 직장(일)을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개월

▶▶ 응답 후 E1으로 이동

E. (기타) 가구소득

E1. 귀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세금공제 이전 금액)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만원

☞ 정확한 액수 기입이 어려운 경우 E1-1로 이동

E1-1.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으신 경우, 대략 얼마 정도 되십니까?

- ① 50만원 미만
- ② 50 ~ 100만원 미만
- ③ 100 ~ 150만원 미만
- ④ 150 ~ 200만원 미만
- ⑤ 200 ~ 300만원 미만
- ⑥ 300 ~ 400만원 미만
- ⑦ 400 ~ 500만원 미만
- ⑧ 500 ~ 600만원 미만
- ⑨ 600 ~ 700만원 미만
- ⑩ 700 ~ 1000만원 미만
- ⑪ 1000만원 이상

☞ B5 문항에서 '③ 총계 36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응답 종료

☞ 그 외는 F1으로 이동

F. 보훈가족취업지원 정책 및 서비스

F1. 귀하가 취업하는데 있어 선호하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 사업체(직장)명: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정확한 사업체(직장) 기입이 어려운 경우 F1-1로 이동

F1-1. 정확한 사업체(직장)를 응답하기 어려우신 경우, 다음 중 어느 사업체에 취업하시길 선호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 <input type="checkbox"/> ⑫ 부동산업 |
| <input type="checkbox"/> ② 광업 | <input type="checkbox"/>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input type="checkbox"/> ③ 제조업 | <input type="checkbox"/> ⑭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input type="checkbox"/>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input type="checkbox"/> ⑮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input type="checkbox"/>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input type="checkbox"/> ⑯ 교육 서비스업 |
| <input type="checkbox"/> ⑥ 건설업 | <input type="checkbox"/>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input type="checkbox"/> ⑦ 도매 및 소매업 | <input type="checkbox"/>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input type="checkbox"/> ⑧ 운수 및 창고업 | <input type="checkbox"/>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input type="checkbox"/> ⑨ 숙박 및 음식점업 | <input type="checkbox"/>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 <input type="checkbox"/> ⑩ 정보통신업 | <input type="checkbox"/> ㉑ 국제 및 외국기관 |
| <input type="checkbox"/> ⑪ 금융 및 보험업 | |

F2. 귀하가 취업하는데 있어 선호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 (직업/업무로)하는 일: _____

☞ 정확한 직업(업무) 기입이 어려운 경우 F2-1로 이동

F2-1. 정확한 직업(업무)을 응답하기 어려우신 경우, 다음 중 어떤 직종으로 취업하시길 선호하십니까?

- ___ ① 관리자
- ___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___ ③ 사무 종사자
- ___ ④ 서비스 종사자
- ___ ⑤ 판매 종사자
- ___ ⑥ 농림·어업 관련 종사자
- ___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___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___ ⑨ 단순노무 종사자
- ___ ⑩ 군인

F3. 귀하가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체로 어디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 ___ ① 중소기업
- ___ ② 중견기업
- ___ ③ 대기업
- ___ ④ 공기업 및 정부 부처
- ___ ⑤ 외국계 기업
- ___ ⑥ 기타: _____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인 경우
 ※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인 경우

F4. 귀하가 희망하는 연봉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 ___ ① 연 2,000만원 미만
- ___ ② 연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___ ③ 연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___ ④ 연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 ___ ⑤ 연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___ ⑥ 연 4,000만원 이상

F5. 귀하가 취업시 희망하는 근무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 ___ ① 전일제 근무
- ___ ② 시간제 근무

※ 전일제 근무: 시간제 근무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시간제 근무: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기업간담회 질문지

[취업지원 대상자 및 실시기관 간담회]

연구 과제명	(국가보훈처) 고용부담금 도입 등 의무고용제도 발전방안
연구 책임자	김문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정은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윤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담회 목적	현행 보훈특별고용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고용부담금 이행안과 의무고용 비율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가. 연구 목적 및 배경

〈연구배경 및 목적〉

-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이 있음
- 의무고용 추가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합리적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하는 것이 연구목적

〈현행 보훈특별 고용제도〉

- 의무고용 부과대상
 - 현행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정원 5인 이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과 공립학교 일산적으로 하루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간담회 내용〉

- 보훈특별고용제도 실효성을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 고용부담금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
- 취업지원제도 합리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취업지원 대상기관에서 의무고용을 어떻게 채우는지, 경험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보훈특별고용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I 의무고용제도 활용 과정 및 현황

<p>아이스브레이킹 및 참여자 소개</p>
<p>1. 연구자 / 참여자 소개하기</p>
<p>2.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대해 간단히 소개</p>
<p>보훈대상자 의무고용 현황 파악</p>
<p>3. 취업지원대상기관에서 보훈대상 의무고용대상자를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 적용받고 있는 의무고용률은? 실제 이행률의 추이?</p>
<p>4. 채우고 있지 못하는(채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p>
<p>5. 의무고용, 보훈특별고용으로 취업한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이직률에 차이가 있는</p>

II

의무고용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무고용제도, 보훈특별고용제도 문제점

1. 의무고용제도, 보훈특별고용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의무고용제도이행비용이 점차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2. 취업지원실시 기관의 범위를 규모와 기업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범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적절하다면(적절하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3. 의무고용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4.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로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부록 3]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제조업(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80억원 이하	
	펠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12개 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80억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억원 이하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20억원 이하		
수도업		E36			
건설업		F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제조업(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160 보훈 의무고용제도 발전방안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N (N76 제외)	4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임대업	N76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부품 의자 제조업	C30393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부록 4]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개 년월	수	자산별 구분	기업집단 지정대상
2022년 5월	76	상호출자제한 집단(47)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포스코,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농협, 신세계, 케이티, 씨제이, 한진, 카카오, 두산, 엘에스, DL, 부영, 중흥건설, 미래에셋, 네이버, 에스-오일, 현대백화점, 에이치엠엠, 금호아시아나, 하림, 에이치디씨, 효성, 영풍, 셀트리온, 교보생명보험, 호반건설, SM, 넷마블,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대우조선해양, 넥슨, DB, 태영, 코오롱, 오씨아이,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공시대상기업 집단(29)	태광, 금호석유화학, 장금상선, 동원, 한라, 쿠팡, 삼천리, 다우키움, 아모레퍼시픽, 엠디엠, 동국제강, 크래프톤, 삼양, 애경, 대방건설, 중앙,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반도홀딩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유진, 보성, KG, 아이에스지주,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2021년 5월	71	상호출자제한 집단(40)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농협, 신세계, 케이티, 씨제이, 한진, 두산, 엘에스, 부영, 카카오, DL,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에스-오일, 셀트리온,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네이버, 에이치디씨, 효성, 영풍, 하림,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넥슨, 대우조선해양,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코오롱
		공시대상기업 집단(31)	한국타이어, 대우건설, 오씨아이, 태영, 이랜드, 세아, 중흥건설, 에이치엠엠, 태광, 동원, 한라, 아모레퍼시픽, IMM인베스트먼트,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다우키움, 한국지엠, 장금상선, 동국제강, 쿠팡, 애경, 반도홀딩스, 유진, 하이트진로, 삼양, 대방건설,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항공우주산업,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중앙

자료: 기업집단포털(<https://www.egroup.go.kr/egps/wi/stat/kap/appnSttusList.do>). 2022.11.18. 인출

[부록 5] 중소기업·중견·대기업 비교(요약)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주요 제외대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소(유예)기업, 대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 영위 기업	-
기준 조건	4개 모두 충족(AND)	4개 중 1개 충족(OR)	2개 중 1개 충족(OR)
규모기준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이하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초과 (금융·보험 및 연금업 제외)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소속회사 ※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독립성 기준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 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 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법인(외국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 ※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채권 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기업 제외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 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	
확인방법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기업집단 편입 및 제외 공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기업집단포털 (www.egroup.go.kr)
담당 및 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mss.go.kr - 지방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www.ftc.go.kr)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www.mss.go.kr)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www.motie.go.kr)	
		중견기업 성장추진 및 견	도전규제 및 공적거래

[부록 6] 취업지원 실시기관 업종 분류

연번	업종분류(기준)	연번	업종분류(기준)
1	1차 금속 제조업	41	수상 운송업
2	가구 제조업	42	숙박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3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4	식료품 제조업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5	어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6	연구개발업
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7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	광업 지원 서비스업	4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9	교육 서비스업	49	음료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50	음식점 및 주점업
11	금속 광업	5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5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	금융업	5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기타 개인 서비스업	5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5	임대업(부동산 제외)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6	입업
17	기타 제품 제조업	57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	농업	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	담배 제조업	60	전기장비 제조업
21	도매 및 상품중개업	61	전문서비스업
22	도시철도 운송업	62	전문직별 공사업
2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6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4	방송업	64	정보서비스업
25	보건업	65	종합 건설업
26	보험 및 연금업	66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27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7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28	부동산업	68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	비금속 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69	철도운송업
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0	출판업
3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2	사업지원 서비스업	72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3	사회복지 서비스업	73	통신업
34	생명 보험업	7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7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6	석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7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소매업(자동차 제외)	77	항공 운송업
38	손해 보험업	78	협회 및 단체
39	수도사업	7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0	수리업	80	환경 정화 및 복원업